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ing the Supporting System for Married
Immigrant Women Delivered by Local Governments

2008. 12.

연구진

조석주 (연구위원)

이상목 (수석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진의 견해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 문

최근에 국내로 들어오는 많은 외국노동자들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여성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한국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오랫동안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 국민으로서는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처하고 다양성 속에서 국민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회적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차원에서도 우리와 피부색깔 및 외모가 다른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겪게되는 한국사회의 적응문제, 인권문제, 자녀교육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인으로 국내에 정착하여 살고자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주로 중앙정부 및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종교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정립과 지역사회 통합에 미약하나마 공헌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과제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유 정 석**

요 약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외국인 유형은 크게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한국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성결혼이민자는 결혼 후 2년이 경과하고 일정한 심사를 통과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즉 한국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수는 2002년에는 약 3만4천명 정도였던 것이 2008년 5월 현재 144,385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총각의 약 30% 이상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살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겪게되는 한국에서의 정착생활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한국어교육, 자녀교육, 가정생활, 가정경제, 이혼 등 개인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이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한국 정착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결혼이민자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결혼이민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은 결혼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국내거주 외국인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및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실질적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미흡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달되는 정책만 수행하였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내국인과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생활정보 제공·상담창구 설치 등 커뮤니케이션관련 서비스가 부족하고, 자녀 교육지원·보건·의료 등 사회복지서비스, 자연재해·화재 등의 사회생활

지원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통합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결혼이민자가족 관리와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통합하여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을 각 장별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들이 여러 인종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서,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의 개념정의와 다문화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현황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필요성을 논의하였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체계와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외국 사례로서 대만, 일본, 영국의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살펴 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은 안산시를, 도·농복합지역은 제천시를, 농촌지역은 장수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시도되었다. 첫 번째는 각 문항에 대한 단순 빈도분석이다. 둘째는 각 설문내용에 대한 출신국가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는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의 지역특성별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이와 같이 분석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전자는 다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후자는 교육, 행정서비스, 시민사회단체,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등으로 유형화시켜 결혼이민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4
제2장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론적 논의	7
제1절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이론	8
1. 다문화사회 개념	8
2. 다문화주의 개념	9
3. 다문화주의 이론	10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8
제3장 결혼이민자의 현황과 지원체계	23
제1절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현황과 지원 필요성	23
1. 결혼이민자의 개념	23
2. 결혼이민자의 현황과 정착상의 문제점	24
3. 결혼이민자 지원의 필요성	28
제2절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지원체계 및 문제점	29
1. 중앙정부	30
2. 지방자치단체	33
3. 시민사회단체	36
4. 문제점	39
제3절 외국의 결혼이민자 지원 사례분석	41
1. 대만	41

2. 일본	43
3. 영국	46
4. 시사점	49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현황과 문제점	52
제1절 개요	52
제2절 결혼이민자 지원 현황	53
1. 도시지역 : 안산시를 중심으로	53
2. 도·농복합지역 : 제천시를 중심으로	58
3. 농촌지역 : 장수군을 중심으로	62
제3절 결혼이민자 지원의 문제점	67
1. 제도적 측면	67
2. 운영적 측면	69
제5장 결혼이민자의 의식조사 분석	73
제1절 조사설계	73
1. 자료수집과 조사방법	73
2.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75
제2절 분석내용	79
1. 결혼이민자 의식조사의 총괄분석	79
2. 출신국가별 결혼이민자 의식분석	109
3. 거주지역별 결혼이민자 의식분석	119
제3절 시사점	127
1. 제도적 측면	127
2. 운영적 측면	130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개선방안	133
제1절 기본방향	133
1.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	133
2.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135

제2절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136
1. 제도적 측면	136
2. 운영적 측면	149
제7장 요약 및 결론	161
참고문헌	165
Abstract	170
〈부록〉 설문지	172

표 목 차

〈표 3-1〉 2007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현황	31
〈표 3-2〉 중앙정부의 결혼이민자 지원현황	33
〈표 3-3〉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현황	34
〈표 3-4〉 군포시 시민사회단체 '아시아의 창' 사업내용	37
〈표 3-5〉 외국인 지원기구 및 단체 현황: 지역적 분포	38
〈표 3-6〉 외국 사례분석 결과	48
〈표 4-1〉 안산시 국제결혼가정 수	53
〈표 4-2〉 안산시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	53
〈표 4-3〉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주요업무	54
〈표 4-4〉 안산시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및 예산(2007)	56
〈표 4-5〉 안산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	57
〈표 4-6〉 제천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원사업 및 예산(2008)	60
〈표 4-7〉 제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	61
〈표 4-8〉 제천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교육과정	61
〈표 4-9〉 장수군 결혼이민자 거주현황(2008. 10 현재)	63
〈표 4-10〉 장수군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64
〈표 4-11〉 장수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 및 예산현황	65
〈표 4-12〉 장수군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한 한글교육 현황	66
〈표 4-13〉 결혼이민자 지원의 문제점	71
〈표 5-1〉 결혼이민자의 의식조사 응답결과	74
〈표 5-2〉 설문항목의 구성과 내용	76
〈표 5-3〉 응답자의 출신국가	79

〈표 5-4〉 결혼이민자의 연령	80
〈표 5-5〉 배우자(남편) 연령	81
〈표 5-6〉 배우자(남편)와의 결혼기간	81
〈표 5-7〉 배우자(남편)와 결혼하게 된 방법	82
〈표 5-8〉 응답자의 직업	83
〈표 5-9〉 한국인과 결혼하게 된 이유	84
〈표 5-10〉 한국어 습득 방법	85
〈표 5-11〉 한국어를 잘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점	86
〈표 5-12〉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88
〈표 5-13〉 자녀들의 학습능력 및 성적 수준	89
〈표 5-14〉 자녀들을 위한 학습 및 숙제지원 정도	90
〈표 5-15〉 결혼이민자의 월수입	91
〈표 5-16〉 한국과 모국에서의 경제적인 생활수준 비교	92
〈표 5-17〉 현재, 한국에서의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92
〈표 5-18〉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가에 대한 여부	93
〈표 5-19〉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기술	94
〈표 5-20〉 한국에서의 결혼생활 만족	95
〈표 5-21〉 결혼생활 만족도에 대한 출신국가별 분석	96
〈표 5-22〉 고부간의 갈등 유무	97
〈표 5-23〉 배우자(남편)의 폭력 경험 유무	97
〈표 5-24〉 배우자(남편)의 폭력 사유	98
〈표 5-25〉 이웃주민들과의 친밀 정도	99
〈표 5-26〉 이웃주민과의 상호교류 정도	100
〈표 5-27〉 이웃주민들과의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101
〈표 5-28〉 결혼이민자의 민원처리업무 경험 유무	101
〈표 5-29〉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의 공무원 친절도	102
〈표 5-30〉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사항	103

〈표 5-31〉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	104
〈표 5-32〉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들을 위해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	106
〈표 5-33〉 시민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로부터의 도움 경험 유무	107
〈표 5-34〉 시민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로부터의 도움 내용	108
〈표 5-35〉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	108
〈표 5-36〉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출신국가별	110
〈표 5-37〉 자녀들이 커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출신국가별	112
〈표 5-38〉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출신국가별	113
〈표 5-39〉 이웃 주민과의 상호교류 정도: 출신국가별	115
〈표 5-40〉 지방자치단체에서 귀하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 출신국가별	117
〈표 5-41〉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들을 위해 제공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 : 출신국가별	118
〈표 5-42〉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민원업무처리 경험 유무: 거주지역별	120
〈표 5-43〉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공무원의 친절도: 거주지역별	121
〈표 5-44〉 민원업무처리에서의 불편한 사항: 거주지역별	122
〈표 5-45〉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 거주지역별	124
〈표 5-46〉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들을 위해 제공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 거주지역별 ..	126
〈표 5-47〉 결혼이민자 설문조사에 따른 시사점: 제도적 및 운영적 측면	132
〈표 6-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 방안	136
〈표 6-2〉 다문화지원과 결혼이민자지원팀의 주요 기능	137
〈표 6-3〉 다문화센터 기능	144
〈표 6-4〉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과의 결혼이민자지원 역할분담	156
〈표 6-5〉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159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분석체계 6



제1절 연구목적

세계화·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오늘날 지구촌은 국가간 인구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어 세계는 ‘이주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5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인 약 89만 1천여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지난 2006년의 53만 6천여명 그리고 2007년의 72만여명과 비교해 볼 때,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결혼이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수는 2002년 3만 4천여명에서 2008년 5월 현재 14만 4천여명으로 6년 사이에 약 4.2배 증가하였다(행정안전부, 2008).

이와 같은 결혼이민자의 빠른 증가에 따라 사회적응문제, 자녀교육문제, 가정불화와 그에 따른 이혼율 증가 등 이들의 가정적·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발생은 단순히 이들 개인 또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및 사회적인 책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국내거주 외국인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및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실질적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달되는 정책만 일부 수행할 뿐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내국인과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생활정보 제공·상담창구 설치 등 커뮤니케이션관련 서비스가 부족하고, 자녀 교육지원·보건·의료 등 사회복지서비스, 자연재해·화재 등의 사회생활지원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나마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미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정책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사회통합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결혼이민자 관리와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통합하여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2000년 이후 급격한 증가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조사 및 의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현황과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강화 방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범위이다. 우선, 본 연구의 실질적인 연구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현재 가정을 꾸미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이다.¹⁾

결혼이민자에 대한 총체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연구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는 것은 물론 시간상의 제약으로 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였다.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및 기능을 중심으로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농촌지역 등 세 지역으로 유형화시켰으며, 지역특성별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유형별로 한 개의 사례지역을 별도로 선정하여 결혼이민자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도시지역으로는 외국인과의 결혼이민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제도적 정책지원과 서비스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도·농복합지역으로는 충북 제천시, 농촌지역으로는 전북 장수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연구의 내용적 범위이다.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로 인한 우리사회의 다문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의 수요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외국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재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1) 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념은 제3장 제1절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일정 심사를 거쳐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그 전까지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되 결혼 2년이 경과되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및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되 아직 결혼 2년 미만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모두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을 통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수요 및 의식조사를 하였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가별·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하였다. 끝으로, 사례지역에 대한 분석과 결혼이민자들의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 및 양적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분석으로는 기존의 선행연구는 물론 관련 통계자료를 통한 문헌연구와 외국사례에 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사례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 및 결혼이민자와의 인터뷰자료에 의존하여 현황과 실태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양적 분석으로는 결혼이민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문헌조사이다. 구체적인 문헌연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기 전에 기존에 발표된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조사·분석하였다. 결혼이민자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통계청 등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와 관련 학자들이 학회 및 세미나 등에서 발표한 논문 중 외국사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외국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이다. 선진국가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정책 반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대만, 일본,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만 대만의 경우는 전적으로 결혼이민자정책을 소개하고 있으나, 일본과 영국의 경우는 자료의 부족으로 각국의 외국인이민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정책,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실태조사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실태조사를 위해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유형화시켜 각 유형별로 현지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다. 도시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도·농복합지역은 충북 제천시, 농촌지역은 전북 장수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연구진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담당공무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관계자, 결혼이민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현황과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및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넷째, 결혼이민자의 의식분석이다. 결혼이민자의 현실 생활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의식조사를 하였다. 설문 문항은 인적사항, 교육, 가정생활, 지역공동체, 서비스 분야로 유형화시켜 각 유형별로 설문내용을 구체화하여 질문을 하였다. 또한 설문결과를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가별 특징과 거주지역별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으로는 부산시·대구시·제주시·안산시를, 인구 10만에서 30만 이하 그리고 도시와 농촌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은 충북 제천시·충남 공주시·강원도 강릉시를 선정하여 해당지역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나오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연구진이 직접 조사를 하거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관계자의 협조로 이들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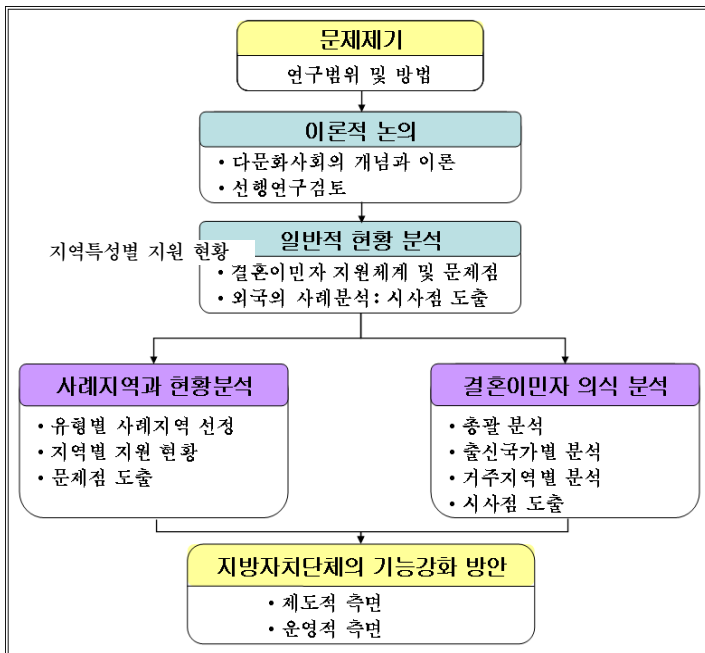
한편, 외국에서 이주해 온 결혼이민자들을 상대로 하는 의식조사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설문지는 각 출신국가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즉, 우선적으로 한국어로 구성된 설문지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요 결혼이민자의 출신지별 국가언어인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영어), 중국어로 번역되어 출신국가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결혼이민자에 대한 의식조사방법론 및 구체적인 설문문항, 조사방법은 제5장제1절의 조사설계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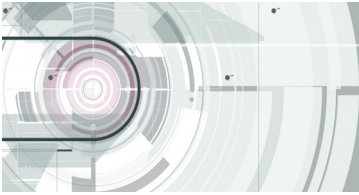
의식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EXCEL과 SPSS 1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통계분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각 항목에 대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주로 사용하며 일부 문항은 카이스퀘어(Chi-square) 기법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³⁾

본 연구의 분석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분석체계



3)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결혼이민자들의 서비스 수요 및 민족도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설문 문항이 대부분 명목변수로 되어 있으므로 결혼이민자들의 출신 국가 그리고 그들의 현재 국내 거주지역에 따른 의식과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더불어 카이스퀘어 기법을 이용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제 2 장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론적 논의

한국사회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현상 중에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다문화공동체 등으로 불리는 한국사회의 다인종·다민족·다문화현상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다문화현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⁴⁾ 우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현상에 있어서 용어와 개념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개별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개념화되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본 장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룬 외국인에 한정하여 그들의 용어상의 문제와 그들이 만들어가는 또는 그들에 의해 형성되는 다문화사회 또는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이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과 주제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방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화 작업은 시도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의 대통령자문동북아시아위원회 학술용역과제(2007년 8월)도 그 중의 하나이다.

제1절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이론

1. 다문화사회 개념

세계적으로 보면 가깝게는 중국이 오랫동안 다인종·다민족·다문화사회를 유지해오고 있고 멀리서 미국이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구 구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을 최고의 선으로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여 오고 있다. 이밖에 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다인종사회로서 유지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일찍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민족과 그들 문화의 지속성을 인정하는 다인종·다민족·다문화사회를 경험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서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들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외국인수의 증가에 따른 다인종·다민족화와 이에 따라 형성되는 다문화사회 현상 그리고 이러한 사회구조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들 용어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사회란 용어의 개념은 한 국가 내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 출신이 함께 어루어져 상호간에 다른 인종과 민족 때문에 받는 사회적 차별없이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김혜순, 2007: 15). 즉, 구성원 상호간에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속해있는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구조가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다민족사회 또는 다인종사회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직은 우리나라를 다문화사회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⁵⁾ 하지만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유입에 따른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 외국인들의 국내 정주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대책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 다문화주의 개념

이처럼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는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에서 주로 국민통합이나 사회통합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온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다문화주의가 주창되기 전에 서구 국가들에 의해 인종정책으로 채택되었던 동화주의⁶⁾나 문화상대주의⁷⁾에 대한 대안으로 다문화주의가 소개되었다.

더욱이 산업화를 거쳐 후기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가치체계가 물질적 가치에서 탈물질 가치로 변화하고 사회의 소수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증가와 이들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다양성 속에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서 다문화주의는 발전해왔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사회 내부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정책적으로 정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구견서, 2003: 30). 하지만 각 국의 역사성, 문화성, 정부의 형태 및 특징에 따라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갖는 의미는 각기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베르토베츠(Vertovec, 1996)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몇 개의 인접한 소수집단

-
- 5) 다문화사회에 대해 세계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서구 선진국 특히 OECD 국가들의 외국인민자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봤을 때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6) 동화주의는 강한문화가 약한문화를 흡수하는 문화주의를 일컫는다.
 - 7) 문화상대주의는 각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는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 간의 상하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주의이다.

의 단위문화가 주류사회의 단위문화를 배경으로 점점이 박혀있는 모자이크가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상호 공존하며 각 자의 색깔과 냄새 그리고 고유의 개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되어 또 다른 통합성을 이루어내는 이른바 ‘샐러드 그릇’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문화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체를 관통하는 다문화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문화적 정체성은 강제와 배제와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자 공존을 내용으로 하는 다원적인 국민성을 의미한다(조석주, 2007: 12).

트로퍼(Troper, 1999)는 캐나다의 사례에 근거하여 다문화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문화주의는 주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첫째, 인구학적 측면에서 인종·민족·문화적으로 다원화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 내에 상호 다른 문화에 대하여 존중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이념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들의 인종적·민족적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며 모든 개인이 기회의 평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3. 다문화주의 이론

우리사회에 다문화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는 결혼이민자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게 된 것이었다. 이들 결혼이민자들은 일회성 내지 단기적인 체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 체류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국민의 일부이다.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왔던 문화적 전통 속에서 다문화현상은 분명 문화적 충격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을 필요로 한다.

아직은 다문화사회에 관한 이념적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현상을 바라보아야 하며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서구에서 발달한 다문화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다문화사회의 이념체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다문화사회의 유형

다문화사회의 형성 배경과 관련하여 두 가지 다문화사회의 유형이 발견된다. 하나는 사회 내부의 문제 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 타인종·타민족·타문화가 유입되는 형태이다. 세계화·정보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자본과 노동시장이 보다 빠르게 확대·이동하고 국가 간의 물적 교류는 물론 인적교류가 활발해졌다. 즉, 각 국 또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단기적·장기적으로 외국에 거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와의 접촉이 활발해지고 다른 인종과 문화의 인정과 공존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의 대표적 예는 호주, 캐나다 그리고 미국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사회통합 정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다문화사회의 형태를 띠고 있다(김남국, 2005: 98).

우리나라의 경우는 위의 두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많은 침략을 받아오면서도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지켜온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의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의해 외국인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 이들 외국인들은 정치적 박해를 피하고 경제적 이익을 찾아 집단적으로 이민을 오게 된 형태가 아닌 우리의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우리사회에 편입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의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적으며 반대로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체계 즉, 다문화주의의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다문화사회의 수준과 사회통합의 유형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의해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편입되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유형의 경우에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여 함께 공존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주의의 수준과 범위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의 유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다. 따라서 소수집단으로서 외국인들의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은 미미한 정도이다. 특히, 우리나라 보다는 경제적·정치적으로 덜 발전된 나라로부터 이주해 온 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들 소수자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주류사회로부터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좀 더 공정하고 더 나은 기회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편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소수의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통합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이혜경, 2007: 224-5). 첫 번째는 주류사회의 문화에 소수집단의 문화가 흡수되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형태로서 이를 ‘동화 유형’이라고 한다. 두번째는 ‘용광로 유형’으로서 다양한 문화들이 용광로에 들어가 하나의 독특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최현미, 2008: 103).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유형 모두 결국은 소수자들의 고유한 언어나 문화를 포기하고 주류사회에 전적으로 편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문화적으로 주류사회에 동화되면서 하나의 국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은 대표적으로 1960년대까지의 미국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세번째는 ‘다문화 유형’ 또는 ‘통합 유형’이다.⁸⁾ 이것은 소수 외국인들이 자신들 고유의 문화나 언어를 간직한 채 주류사회와의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은 주로 1970년대 이후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 이민정책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 대표성도 인정하는 등의 보다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각 국가 마다 주어진 환경과 문화적 전통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회통합정책으로서의 다원주의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8) 동화 유형이 일방적인 형태를 의미한다면 다문화 또는 통합 유형은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쌍방향적인 형태를 의미한다. 김희정(2007: 75) 참조.

다. 다문화주의의 목적과 정책유형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구조에서 이들의 사회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소개되었다. 그것의 기본적인 목적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통한 사회발전에 있다. 하지만 다문화주의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각 사회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 그리고 다문화사회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또한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위하여 제도적이거나 법률적인 개선을 목표로 할 수 있고 또는 사회문화적 그리고 의식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첫째,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호주와 같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가 함께 어우러져 함께 살고 있는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사회통합을 기본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다양성 속에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찾고 국민통합으로 사회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둘째, 일찍부터 외국의 노동자 유입이나 소수민족의 유입으로 다문화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각 종 제도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소수민족운동이 격렬히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들 소수자들의 욕구불만을 해소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를 통해 제도적·법률적으로 차별구조를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설동훈, 2008). 또한 소수자들에게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주의가 실질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의 목적이 국가수준을 벗어나 시민사회, 더 나아가 개인수준에까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일단 사회 내에서 소수인종이나 외국노동자 그리고 결혼이민자와 같은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 선입견, 차별의식 등을 극복하고 공존의 필요성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구건서, 2003: 44-45).

위와 같은 다문화주의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는 크게 제도

적인 것과 운영적인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사회구조를 지탱해주던 각 종 법규나 규범들이 소수자들의 유입과 그들과의 공존을 위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제도라든지 사회규범 및 처벌규정 등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제도개선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소수자들의 기회균등과 인권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 종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소수자들에 대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확대를 통한 정치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는 연금제도라든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소수자들이 주류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려 공존할 수 있도록 각 종 보조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언어교육으로서 소수자들은 물론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기관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또한 이들 소수자들이 주류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교육이나 유적지 탐방과 같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라. 다문화주의의 모델

우리사회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아직 구체적이고 합의된 이론적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제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서구에서 발달한 이념체계로서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아직 초보적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와 그것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 다문화사회로의 전이와 그에 대한 다문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서구의 다문화주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우리사회의 특성과 위에서 살펴 본 외국인 유입의 양태 등을 고려한 이론적 모색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 필요한 다문화주의 이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는 가운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간의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다인종·다문화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즉, 우리의 고유한 가치체계와 사회질서의 규범을 간직한 채 이질적인 문화와의 조화와 조정을 통한 다문화사회를 의미한다.

그러나 다문화사회구조가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질적 문화 간의 문화적 융합과 조합은 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갈등과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각 각의 사회가 자신들이 원하는 다문화주의의 모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추진 주체와 목적 및 방법 등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본 절에서는 다문화주의 이론을 고찰하기 위하여 추진 주체와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모델에 대해 살펴본다.⁹⁾

1) 국가주도 다문화주의

사회의 다문화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안과 집행은 국가의 업무에 속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문화주의의 확산은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주로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주도하는 이유는 우선 국익적 차원에서 타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민주국가로서의 지위에 맞는 사회 유지 및 통합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가 간의 인적교류의 자유를 보장하고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사회로부터 야기되

9) 본 절에서 설명하는 세 가지 모델에 대한 용어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윤인진(2007)의 글에서 도움을 받았다.

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주도의 다문화주의 유형은 국가의 소수자 정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사회통합을 위하여 이민자나 소수인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이다.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국가 등에서 국가주도의 다문화주의 모델을 찾아 볼 수 있다(김희정, 2007: 60-61).

국가에 의한 다문화주의 정책의 주요 대상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외국인이다. 국가는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 외국인들을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국가주도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인들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 사회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언어교육, 취업알선, 기술교육, 다문화 축제 주최,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김희정, 2007: 60-61).

그러나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다문화주의 정책은 주로 합법적 신분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확일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주의 정책은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한다.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정책의 시행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결국 비효율적인 결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2) 시민사회주도 다문화주의

국가주도로 만들어진 다문화주의 정책이 실제로 모든 외국인에게 균등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사회적 약자로서의 외국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국가가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

는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문제나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는 물론 그들의 이익대변 기능을 시민사회가 담당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국가주도의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담당함으로써 다문화주의를 내재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사회가 주체가 된 다문화주의는 지역에서 이질적인 문화의 상호 인정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돕고 문화적 관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또한 외국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모하기도 한다. 때로는 정부의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외국인들의 지원서비스를 담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주도의 다문화주의는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시민단체의 재정적·인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시민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위법 및 탈법의 범위를 넘나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 활동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시민사회 내의 다양성 때문에 다문화주의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공통성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3) 협력적 다문화주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주의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와 시민사회가 역할분담을 통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의 정책적 범위 안에서 시민사회 중심의 다문화주의 운동 및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전체적으로 다문화주의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국가가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처 국가가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사회가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은 국가가 보충해

좁으로써 외국인 지원서비스의 효과를 배가시킴은 물론 다문화주의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체제가 도입되고 있다(강휘원, 2007; 홍기원, 2007; 이종열·황정원·노지영, 2008). 다문화주의의 효과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국가와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체제가 양자 간의 협력적 다문화주의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체제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다문화주의 모델에서는 정책의 대상자인 외국인의 협력도 필요하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직·간접적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현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본격화되어 왔다. 초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부재하여 탈·불법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나라의 농촌총각들이 해외의 신부들을 맞이하여 가정을 꾸미고 그들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다문화사회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실감하게 되었고 정부의 정책 또한 이주노동자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정책으로 변화되었다.

2000년대 들어 다문화사회가 더욱 두드러진 가운데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 및 관련 학자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다양한 담론들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다문화주의의 개념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담론의 활성화는 오히려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우리가 원하는 다문화주의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경석(2007: 51-54)은 다문화주의의 주요 내용이 다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들의 생존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들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법적 장치 마련의 시급함을 역설하기도 한다. 또한 다문화주의의 지향점이 사회통합이 아니라 사회 다원화 및 다양성에 두고 있기에 다문화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정부 주도의 다문화정책보다는 다문화 주체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대부분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창되고 있다.

한편, 학자들은 다문화주의의 목적이 사회통합에 있음을 강조한다(강휘원, 2006; 장혜경, 2006; 김현미·김유미·박지현, 2008).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요소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다문화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정희(2008)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시기에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다문화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한국적 상황과 특성에 맞는 다문화주의의 분석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문화주의의 한국화, 즉 한국적 상황에 맞는 다문화주의 이론 정립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지만 체계적인 설명 보다는 논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한국사회학회, 2007).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이민정책 형성의 핵심주체 그리고 정책의 대상 및 방향 등에 있어서 개별 학자들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설명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주의 정책의 대상인 외국인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난민, 결혼이민자, 불법체류외국인, 외국적 동포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시적 다문화주의 이론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다(강휘원, 2006; 설동훈, 2008).

대신 대부분의 연구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사례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그 중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강휘원(2007)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정책형성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장혜경(2006: 101)은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서 소수

자로서 겪고 있는 경제적, 법률적, 사회적 어려움을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해결해 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정부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들의 거주 지역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그들의 수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아(2008)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거주지별로 결혼이민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정책의 문제점으로 이들의 단기적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김경아의 연구는 전라남도 지역에 한정된 사례연구로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수요분석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고속희(2008)는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의식조사를 토대로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우리사회가 점진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문화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연구결과 외국인결혼이민자들의 다수가 다원주의에 입각한 다문화주의 보다는 한국 문화에 흡수되는 동화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도 밝히고 있듯이 결혼이민자들의 학력이나 나이 그리고 출신지역 및 거주지역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중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언어교육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실제로 많은 결혼이민자들의 최대 관심사항이 한국어교육이다. 언어 문제로 인해 취업이나 가정 내에서 시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김진욱(2007)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언어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충청남도 홍성군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는 결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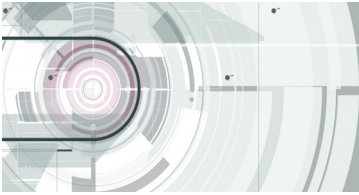
민자들에 대한 언어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총괄적 관리를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주지역이나 출신국가에 따라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한글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바람직하며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한글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결혼이민자들의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는 그들 자녀들의 언어교육 및 학업수행과 관련한 것들이다. 한국 사회의 지나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언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이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언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가정에서 자녀들의 학업지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충분한 사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조혜영·서덕희·권순희(2008)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수행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한 연구에서 이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수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획일적이고 단순하게 시행되기 보다는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체류기간이나 거주지역, 교과목의 종류, 부모의 지원정도, 지역사회의 지원프로그램 유무 및 참여정도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살펴 본 선행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담론 수준을 벗어나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농촌지역이나 특정 지역에 한정된 사례연구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수요조사 또한 제한적 범위와 내용 그리고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현황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보다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수요조사에 바탕을 둔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지방자치단

체 차원에서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따라서 몇몇 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수요욕구에 따른 그리고 그들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다차원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제 3 장 결혼이민자의 현황과 지원체계

제1절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현황과 지원 필요성

1. 결혼이민자의 개념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은 인종 및 민족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체류 목적에 따라서도 다양성이 존재한다.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이재정, 2003: 104), 이들이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된 외국인의 체류목적에 보면 거주, 동거, 상용투자, 취업, 종교, 유학연수 그리고 산업연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장기거주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로서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회사의 상사나 지사에 파견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결혼이민자는 이들 외국인과는 달리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영구히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 온 외국인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을 말한다. 이들은 결혼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이 경과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결혼 후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는 것은 결혼사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¹⁰⁾ 여성결혼이민자

10)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해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국적을 부여했던 제도를 바꿔 2009년 부터는 이들에 대해서도 귀화시험을 치를 방침이어서 국적업무는 한층 복잡해 질 전망이다.

는 비록 한국남성과 결혼하였다 하여 즉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결혼 2년이 경과한 후 일정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는 결혼 2년 미만의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구분 된다.¹¹⁾ 그러나 아직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모두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정착과 영주할 것을 전제로 하는 외국인으로서 자신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이 겪게 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이들 다문화가정이 겪는 문화적 갈등과 사회적응과정은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2. 결혼이민자의 현황과 정착상의 문제점

가. 현황

한국사회가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던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08년 5월 현재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891,341명(국적취득자와 불법체류자 포함)으로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수치는 2007년도의 72만명 수준보다 약 23%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들 외국인들의 구성을 보면 초창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¹²⁾이 많았던 반면 서서히 국제결혼을¹³⁾ 통한 결혼이민자들의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김헌민·김유미·박지현, 2008: 11). 결혼이민자의 수는 2002년에는 약 3만4천명 정도였던 것이 2008년 5월 현재 144,385명으로

11)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자나 국적 미취득자 모두를 포함하였으며, 제5장의 의식조사에서도 국적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양자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2) 2007년 3월에 실시한 방문취업제의 도입으로 특히 중국(조선족) 국적의 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13) 국제결혼의 증가 추이를 보면, 1990년도에는 전체 결혼의 1.2% 정도였으나 2000년도에는 3.7%, 2005년에는 13.6%까지 증가하고 있다. 김남일(2007: 145)과 홍기원(2007: 914) 참조.

전체 외국인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도의 약 127,000여명에 비하면 약 14% 정도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중에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8%이다(행정안전부, 2008). 외국인들의 국적 또한 다양해지면서 다인종·다민족·다문화사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중국이 약 57% 정도이고 그 뒤를 이어 대만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의 구성을 보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국적자와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출신이 다수이며 구소련 지역의 국가 출신 또한 증가하고 있어 문화적 다양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결혼이민자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양태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거주자가 약 56% 정도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들은 출신 국가별로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데 조선족들은 서울의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등에 집중 거주하며, 경기도에서는 안산, 수원, 성남 등에 집단적으로 거주한다. 동남아시아 출신은 주로 경기도 화성, 안산, 시흥, 김포와 인천의 남동, 경남의 김해, 충남의 천안 등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나. 정착상의 문제점

결혼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어려움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나타난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적인 국제결혼 대행업체의 문제로 인한 정신적인·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내에서의 불화 및 폭력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 한편,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결혼이민자들은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하는 부담감은 물론 언어적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 등이 그들의 자녀교육과 취업 및 사회 참여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개인적·가정적·사

회적 장애요인 또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차후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첫째, 결혼이민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언어적 어려움이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취업이나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일 등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적 어려움은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절박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자녀교육의 문제이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에 자녀의 교육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가 된다. 엄마의 언어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자녀의 교육문제가 더 심각하게 된다. 자녀들의 한국어 습득에서부터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자녀의 학업지도의 어려움 그리고 친구들과로부터 엄마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들의 사교육에 대한 지원도 약할 수밖에 없어 학업성과가 친구들과에 비해 떨어지는 일도 발생하기도 한다. 학교내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교육 환경이 부족하여 친구들과의 어울림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이들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셋째,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에는 가정 내의 폭력과 인신공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결혼이민자들의 이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 증가 속도를 보면 2002년에 401건이던 것이 2003년에는 583건, 2004년에는 무려 1,611건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급증하는 이혼사례의 사유로는 가정 내의 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장혜경, 2006: 98-99).

결혼이민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 빈곤 가구수가 다수를 차지한다. 전체 결혼이민자 가구 중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인 가구가 50%를 넘어서고 있다(장혜경, 2006: 98).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신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은 물론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또한 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부딪치는 사회적 편견과 언어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직장 내에서는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감내해 내야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넷째,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문제이다. 결혼이민자들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한국사회에 흡수 또는 양립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고통의 시간이 필요함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부 편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섯째,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결혼이민자들은 특정 지역에 집중 거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들 결혼이민자들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구미와 창원 등지에서 집단거주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집단거주화 하는 것은 상호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반대로 자기들 끼리만의 집단을 형성하여 슬럼화되면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될 가능성도 또한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복합적이고 다양한데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는 조직적이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의 대처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언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취업에 대한 각종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제약과 가정 내의 비협조로 인해 이들 결혼이민자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결혼이민자가족센터와 같은 지원단체에 직접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각종 지원단체의 사업이 일부 결혼이민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에 의한 지원과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 점점 더 사회적 고립과 소외가 심화될 수 있다.

3. 결혼이민자 지원의 필요성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현재까지는 크게 변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국민수에 비해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다인종·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유발 및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우리나라의 오랜 문화적 전통이 여전히 지배적인 가운데 다른 인종과 민족 그리고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의 비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회가 바람직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들 소수집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특히 도시 주변과 농촌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문제와 이들의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다문화현상 내지 다문화주의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의 전환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¹⁴⁾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있어 각 국 간의 물적교류는 물론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 시대에 있어 각 국 간의 정치·군사적 교류보다도 문화적 교류의 양과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는 물론 베트

14) 한경구·한경수(2007: 73)는 외국인들이 초기에 주로 이주노동자의 형태로 우리사회에 유입할 때와는 다르게 결혼이민자들의 증가는 이들이 새롭게 우리사회의 또 다른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포용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남과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까지 퍼지고 있는 ‘한류열풍’은 한국문화에 대한 전파는 물론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각 국 간에 발생하는 인적 및 문화적 교류의 일상화를 거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농촌총각의 결혼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며 나아가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로의 유입이 증가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우리사회에 편입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아직은 소수자들인 이들 결혼이민자들을 우리사회에 편입시켜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특히, 안정적인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소극적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다문화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2절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지원체계 및 문제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의 체류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 등을 통해 장기적 또는 영구적으로 정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한국사회의 적응과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¹⁵⁾는 인식하에 결혼이민자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등도 결혼이민자들의 인권보호와 사회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주의정책의 형성은 중앙정부의 주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그리고 시민

15)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초기의 규제와 관리적 측면에서 출발하여 외국인 인력의 활용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거쳐 이들이 어느 정도 정착한 후에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리고 사회통합정책에 있어서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이혜경(2007: 220) 참조.

사회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윤인진, 2007: 259). 본 절에서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체계와 주요 내용 그리고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우선 외국인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마련한다.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관련부처의 외국인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외국인정책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깨닫고 외국인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물론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이 기존의 소극적·수동적·폐쇄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능동적·개방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한 정부의 외국인지원정책 중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처음에는 결혼이민자들의 체류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제반 여건의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 이들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과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정보 등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다. 이후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이들의 취업을 자유롭게 허용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들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생활안정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시책으로는 2005년 12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하여 일정요건의 결혼이민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한시법인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에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안내,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동시통역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4월에는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이 우리사회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정책안을 발표하였다.¹⁶⁾

2006년 처음으로 전국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21개소)하였으며 2007년에는 38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한국어 교육,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2008년도에는 80개소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표 3-1>참조).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본 법 제정을 계기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것이 예상된다.

〈표 3-1〉 2007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현황

공통사업	특화사업
한국어교육	• 문화정서 지원사업 (자조모임, 문화교육, 멘토링, 동아리활동, 행사참가, 기타)
가족통합교육	• 역량강화 지원사업 (정보화교육, 직업교육, 다문화강사 양성교육, 원어민강사 양성교육, 통·번역사양성교육, 기타)
가족상담	•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다문화교육, 다문화축제, 다문화캠페인, 기타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결혼이민자 지원상황은 각 부처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표 3-2> 참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제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불법 결혼중개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

16) 발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탈법적인 결혼 중개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②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③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④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⑤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⑥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 책임자 교육’, ⑦ ‘추진체계 구축’ 등이다.

결혼중개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등록자격을 명시하는 등 직업소개업, 근로자파견사업 등과의 겸업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국제결혼 중개계약서 작성, 정보의 사전제공 및 확인의무부여와 시도지사의 중개업체에 대한 시정·변경 명령, 등록취소, 폐쇄조치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국제결혼중개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외국인이 없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및 학부모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부터 4년간 총 7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학부모들의 한국어실력을 향상하며 다문화교육의 기반을 구축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또한 법무부에서는 2007년 7월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의 법적인 근거로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들로 하여금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외국인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제한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¹⁷⁾

이 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5년 마다 제한외국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타 다른 중앙정부의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17)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출입국관리, 외국인인권, 난민, 이민정책, 산업인력확보 등의 문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외국인 문제와 관련하여 총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표 3-2〉 중앙정부의 결혼이민자 지원현황

관련부처	지원 내용
여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교육 및 가족상담 • 여성결혼이민자 멘토링 • 한국어 교재 개발 및 한국어 교실 운영 • 모성보호가이드 발간 •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설립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신청요건 완화 • 결혼이민자의 이혼, 별거 시에도 자녀접견을 위해 국내체류 허가
보건복지 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혈인 생계비 및 학비 보조 • 빈곤층 혼혈인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 결혼이민자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신청 시 여성결혼이민자 소득, 재산 제외 • 건강보험 가입안내 외국어 리플렛 제작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제로의 전환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이주여성 언어사용 실태조사 실시 • 이주여성 자녀를 위한 한국문화체험 행사 • 한국어 강좌개설 운영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지원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에게도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부여 •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차별없는 혜택 제공
교육과학 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역량 강화 • 한국어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료 : 유희정(2008: 4)과 김경아(2008: 11)에서 재구성

2. 지방자치단체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결혼의 증가와 결혼이민자들의 정주화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을 주로 담당하였다. 초기에는 결혼이민자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보장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타문화 및 타민족과의 공생해야 하는 현실성과 필요성에 관한 이해력을 향상시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과 이들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결혼이민자정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집행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결혼이민자 지원기능 및 역할은 결혼이민자들의 언어소통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지원, 취업과 주거 및 사회보장과 같은 생활지원, 상담 및 생활정보제공, 그리고 지역 내의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지원 시민사회단체 내지 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조직적 지원체계 마련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3-3> 참조).

〈표 3-3〉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현황

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한국어교육, 부부교육, 문화체험, 요리교실 등)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멘토링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자매결연 및 화합행사 • 결혼이민자를 위한 컴퓨터 실무과정 • 평등가족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출산비 지원 • 결혼이민자 명절 위문, 생활안정 지원, 간담회 급식비 지원 • 취학 전 자녀양육비 지급, 가족연수회 •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전통예절교육, 외국인주부 가족의 날 행사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연수, 우리문화알기 프로그램 • 한국어교육, 법률상담, 문화체험 • 결혼이민자 요리솜씨 자랑, 결혼이민자부부 합동결혼식 • 문화유적 답사 • 결혼이민자 멘토링제

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가정 행복한 가정 가꾸기 사업, 우리문화보급 사업 • 자녀학업자료지원사업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사업, 네트워크사업 • 가족교육사업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공동체훈련 지원 • 결혼이민자간담회, 이혼관련 프로그램 운영 •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주부쉼터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결혼이민자 가족의 날 행사 지원, 한국문화탐방, 전통음식 및 꽃꽂이 교육 • 출산용품지원, 한글교육, 한국문화 예절익히기 • 한글교육 및 문화유적지 탐방 • 외국인의 날 행사 지원, 우리문화 이해와 생활교육 • 결혼이민자 워크샵 • 결혼이민자 가정의 농가도우미 지원 • 결혼이민자 사이버 지원체계 구축 • 농촌 결혼이민자 지원협의회 운영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 공부방 운영,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민자 정보자료실 운영, 결혼이민자 간담회 • 결혼이민자 전통문화 체험교육 • 행복한 농촌가정 만들기 사업 • 결혼이민자 문화유적 탐방 • 결혼이민자 사랑의 후원(대모) 결연사업 • 결혼이민자 및 자녀교육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실시 •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재발간 • 부부교육, 생활상담, 문화교육 • 부부(가족)캠프, 국제결혼가정학교, 결혼이민자 가족 어울 마당 •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양성

자료 : 유희정(2008: 5-6)에서 재구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결혼이민자 지원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민간위탁 형식으로 이루어진다.¹⁸⁾ 2006년 처음으로 전국에 21개소가 문을 열었

18) 기존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바뀐다. 정부는 2008년 9월 9일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고 2007년에는 38개소로 확대·지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80개소로 확대·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사업과 남편 교실 등의 가족통합교육 그리고 자녀지원사업 등의 가족상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 시민사회단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외국인지원은 1990년 이후 외국의 노동자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이주노동자들의 불합리한 대우와 열악한 작업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대부분이었다.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단체들도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문화적 수준에서 해결하려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 예를 들면 안산시의 ‘국경 없는 마을’ 같은 단체는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다문화운동을 실천하는 단체이다(박천웅, 2007).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신분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생활인으로서 차별이나 편견 없이 각 종 행정편의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과 함께 시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지원체계는 정부 차원의 지원 이전부터 시작하였고 정부의 지원체계를 선도한 면도 없지 않다. 또한 종교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한국어 교육서비스, 법률지원 등 자원봉사 성격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군포시에 있는 ‘아시아의 창’이라는 시민단체는 2008년 초에 설립되었는데 그 목표과 사업내용을 보면 <표 3-4>와 같다.

〈표 3-4〉 군포시 시민사회단체 ‘아시아의 창’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들의 주체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사업 진행 • 차별의식을 줄이는 교육사업을 통한 시민의식 향상 • 상담을 통한 이주민의 문제 해결 •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활동 • 다문화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사업 내용	고 충 상 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금, 퇴직금, 산재 상담, 의료지원 및 상담 • 결혼이민자를 위한 의료지원 및 법률상담 • 의료보험이 없는 이주민을 위한 의료공제회 운영
	자 기 성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 • 컴퓨터 교육 • 찾아가는 사랑방 교육 : 공단, 집 방문 •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한국문화역사 탐방 • 이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아시아 와의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와 만나는 공나물도서관 운영 - 각국 도서 비치 • 한국청소년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 이주민을 위한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
	지 역 공 동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을 위한 연대활동 •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토론회 • 정책모니터링과 연구사업 • 이주민 실태조사 • 지역사회와 아주민이 함께하는 작은 축제 • 인권, 평화를 위한 캠페인

자료 : ‘아시아의 창’ 내부자료(2008)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의 민간위탁을 통하거나 독자적으로 한국어교육, 의료지원, 법률 및 생

활상담, 그리고 직장 알선 및 기술교육 등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지원기구 및 단체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고용지원센터, 복지관과 같은 공공기관의 수 보다 종교단체나 민간단체의 수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다(<표 3-5> 참조).

〈표 3-5〉 외국인 지원기구 및 단체 현황: 지역적 분포

구분	공공기관	종교단체	민간단체	합계
서울	25	3	12	40
부산	2		25	27
대구	4	2	20	26
인천	1	7	9	17
광주	1	3	29	33
대전	2		8	10
울산	2	1	4	7
경기	14	34	65	113
강원	17		33	50
충북	2	1	25	28
충남	3		23	26
전북	4	3	43	50
전남	11	3	21	35
경북	5	4	34	43
경남	9	2	38	49
제주			10	10
합계	102	63	399	564

자료 : 행정안전부(2008: 16)에서 재구성

4. 문제점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로 인해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다문화주의나 다문화정책이 우리사회의 통합과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다문화적 관용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장기적인 비전과 목적에 대한 뚜렷한 정책적 방향을 잡지 못하고 단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차원에서 임기응변식의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홍기원, 2007: 918).

새로운 환경 하에서 우리의 이민정책의 큰 틀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부족한 가운데 각 행정 부처가 중심이 되어 개별 사안에 대한 프로그램의 양산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여러 부처가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중복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각 부처간 상호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비용의 낭비는 물론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사업 위주의 정부 정책은 사업의 내용 보다는 외형적 규모 등에 더 관심을 두게 되어 전시성의 사업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비전의 미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결혼이민자 정책 또한 장기적·지속적이지 못하고 단기적이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결혼이민자가 집중적으로 정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별로 결혼이민자정책의 필요성이나 관심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별로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균등하게 발전하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19) 이혜경(2005)이 전국의 23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약 58% 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법적인 지위나 출입국문제 그리고 생활보장,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와 같은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한글교육이라든지 각종 행사와 같은 사업에도 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는 업무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정책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별로 큰 특색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의 정책이나 사업 내용에 지역적 특색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 내용이 한국어교육이나 가정상담 및 직업교육 등에 국한되어 있다. 지역행사나 문화탐방과 같은 행사에도 일회성이나 전시형의 사업이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공생하며 살아야 하는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적극적인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정주의적 자세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쌍방향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도움을 주어 함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인식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의 언어 능력이라든지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살려 지역공동체에 공헌함으로써 스스로 우리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지원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서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의 신분 유형에 따라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들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자원봉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성이 필요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법률상담 등에서는 인적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보다 효율적으로 외국인 지원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어져야 한다.

제3절 외국의 결혼이민자 지원 사례분석

외국인 특히 결혼이민자의 급증으로 인한 다문화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사회에 적합한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 경험한 다문화현상과 그에 대한 대책의 사례를 검토하고 교훈을 얻고자 한다. 외국의 사례연구는 우선 각 국의 외국인 이민자현황(결혼이민자 포함)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결혼이민자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대만²⁰⁾

대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일이다. 대만의 경제적 발전과 동남아시아와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게 되고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대만의 전체 결혼 건수 중에서 국제결혼의 비율은 1998년의 15.7%에서 2003년에는 약 32%로 증가하였다.

1987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대만에 입국한 결혼이민자 수는 약 300,000명 정도이다. 이 중에서 중국 및 마카오 출신이 약 65% 정도이고 나머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의 순으로 결혼이민자 수가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정의 출생아 수는 1998년 현재 전체 출생아 수의 약 5%였으나 2002년에는 13%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결혼이민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대만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9년 12월에 “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 지도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2003년에 수정·실시하였다. 2003년 6월에는 행정원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 및 지도조치 업무분담표”를 설치하는 등 관련부서의 자원과 서비스기제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20) 대만의 결혼이민자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김윤태·설동훈(2005)을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대만의 결혼이민자 정책에 의하면 일단 이들에 대한 국적부여는 갈수록 조건이 강화되고 있다. 단지, 이들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취업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돼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보험(건강·재해보험 포함)이 보장되고 체류증이 발급되지 못한 경우에도 기초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대만은 사회공적부조의 자격에서 결혼이민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만인 남편이 저소득 가구인 경우에도 사회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체류증을 받지 않은 경우와 다른 특수한 상황에서도 긴급생활부조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가정 내 폭력에 시달리거나 신변안전에 위협을 호소할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저개발국으로부터 유입된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이들 서비스는 대만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서비스가 많으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언어교육 및 사회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의 이민정책은 초기의 동화정책에서 벗어나 점차 문화다원주의 또는 다문화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에 대만 정부는 이민국을 설치하고 이민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들의 생활기회 및 기본권에는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 대만의 결혼이민자들에게는 복지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과거에 비해 강화되었는데 여전히 참정권 및 언론과 집회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는 제약받고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약받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차별시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대만의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이민정책에 있어서 법·제도적인 문제는 대부분 조례나 규칙 등과 같은 하위 법규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집행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만의 결혼이민자 정책의 역사는 짧지 않으나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의 통합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는 물론 사회복지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편견과 언론과 공무원들의 차별 등이 존재하고 있어 다른 문화의 공존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로의 진입에는 실패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결혼이민자 정책에 당사자인 결혼이민자들의 참여가 부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일본

2005년 현재 일본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약 2,200,000명 정도이며 전체 일본 인구의 약 1.7% 정도이지만 증가 추세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1990년에 외국인 수가 100만명을 넘었는데 15년 사이에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출신을 보면, 한국·조선족, 중국, 브라질과 페루 등의 남미 출신, 필리핀 등의 아시아 출신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한국과 조선족의 비율이 전체 외국인의 약 70%였으나 2005년에는 약 30% 정도로 줄어들고 대신 중국, 브라질, 페루, 필리핀 출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일본 내의 외국인 사회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외국인 중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5년 현재 결혼이민자 수는 약 260,000명 정도이며 국제결혼 건수는 약 33,000건으로 1995년의 20,000건 보다 약 60% 정도 증가했다. 국제결혼으로 일본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출신을 보면 남미 국가 중에서는 일본계 브라질인과 다음으로는 중국과 필리핀 여성이 대부분이다.

일본의 외국인 증가현상은 1985 이후 급속한 엔고로 배경으로 노동자들이 대거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내의 노동수요에 따른

결과이다. 1990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입관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입관법” 개정에서 일본계에게는 특별대우를 부여하여 3세까지 취업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계 노동자들의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특히 남미 지역의 일본계 노동자들의 정주화 현상이 나타났다.

외국인의 정주현상은 세계화와 자본과 노동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본격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타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와 국제협력을 증대하면서 일본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다. 일본의 국적법이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주의로 변화되면서 결혼 등으로 일본국적취득이 자유로워진 것도 외국인 수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농촌층각들의 외국인과의 결혼 증가가 큰 역할을 하였다.

일본 내의 외국인 수의 증가와 이들의 정주화현상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문제가 사회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의 인권이나 노동조건 등과 같은 문제부터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및 복지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의 교육문제까지 광범위한 차원에서 대책이 요구되었다.

일본의 전통적인 외국인정책은 이민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일본민족의 단일성을 고수하고 외국인의 일본인으로서의 동화에 주력하였다. 일본 내에서 이민족의 자체적인 공동체 형성을 경계하였고 따라서 일본의 외국인정책은 배타적이고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점차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였지만 그럼에도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다.²¹⁾ 즉, 1980년대 후반에 개정된 입관법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법적인 관리에만 관심을 두었지 그들의 노동환

21) 1990년대에 들어 일본 정부는 외국인들의 대량 유입에 따라 외국인대책의 일환으로 후생성에 의해 의료부조의 적용범위를 합법적 신분을 보유한 외국인 거주자까지로 확대하였고, 건설성에 의해서는 공영주택 구입시에 국적요건을 삭제하였다. 또한 문부성에 의해서는 공립 초·중학교에 국제교실을 설치하고 담당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외국인 지원정책을 펼쳤으나 대부분 “대책”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2008년 연구보고서: 6-7).

경이나 생활보호 등에는 여전히 소홀하였다.

현재 일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민정책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외국인 수의 증가와 정주화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간담회나 연구회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면, 2005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공생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인 외국인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 내의 외국인지원은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앙정부차원에서 외국인지원의 문제 인식과 대응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외국인의 관리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 그들과의 공생이나 다문화주의의 필요성과 정책화까지는 약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차원에서의 외국인문제는 현재 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모다 마유미, 2007: 63).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외국인지원정책은 우선 지역사회의 외국인들이 현 지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높이는데 치중하고 있다. 외국인거주자의 생활적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상담을 통해 그들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다양한 언어로 된 문서와 홍보물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거주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 사회에 다문화공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의 기업이나 다른 사회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 간에 외국인거주자 지원을 위한 사회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한다(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39-40).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외국인거주자에 대한 지원시책은 주로 정주외국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 특히 재일한국과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는 ‘외국인시민대표회의’ 등을 통하여 ‘외국적 시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조현미, 2004). 구체적으로 가와사키시에서는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시의 행정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하며 각 종 정보와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거주자들이 자기들 고유의 문화를 존중하는 가운데 일본문화와 공생할 수 있는 다문화공생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에게는 각 종 연금제도를 소개하고 이들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위원으로 시정에 참가할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인을 시공무원으로 채용하기도 하며 시공무원들에게 다문화공생에 대한 의식교육도 병행한다(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41-47).

3. 영국²²⁾

2001년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수는 약 4,800,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8% 정도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영연방 소속의 국가 출신이며 기타 중국인과 아프리카 흑인 등이 있다.

이들 외국인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외국이주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유럽인 중에서 유입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서인도제도와 인도대륙으로부터의 유입이 많았다. 이렇게 외국이민자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영국이 과거 대영제국으로서의 영광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영연방국민의 대규모 이주를 허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등으로부터의 이주가 증가하였고 이들은 피부색도 다르고 종교와 문화도 달랐다.

그러나 1962년 영연방이민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외국인 이민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영국의 이민정책은 1960년대 초까지는 자유방임에 기초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영연방국가 출신의 영국이주를 묵인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2) 영국의 사례분석에서는 영국정부의 구체적인 결혼이민자정책에 대한 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한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영국정부의 정책적 특성이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1960년대 이후에는 영연방이주민법을 통해 이주를 통제하는 정책을 펼쳐 결과적으로 이민자 수가 급감하게 되었다.

1950년대 이후에 꾸준히 늘어난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은 영연방의 본국으로서 영국의 포용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영국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정책을 도출케 하였다. 그것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정책이었다.

영국의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과 기회의 평등 개념을 결합한 형태로서 개인들은 동등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리들을 가지는 한편, 종교와 가족 관련 문제들에 있어서의 개인적 권리들을 간직할 수 있었다. 다문화주의정책의 원칙은 차별을 방지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다문화인종 사이 또는 주류사회와 소수인종 사회의 우호적 관계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변화를 추진하였다. 그것은 영국문화로의 동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영국의 가치들을 공유할 것을 유도하는 통합정책이었다.

통합정책의 핵심은 영국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법의 지배, 관용, 동등한 대우, 국가와 역사적 유산에 대한 존경 등 영국의 가치들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민정책의 변화는 최근의 이슬람 이주민 2세, 3세에 의한 자살테러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과거의 자유방임이나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재검토 내지 비판을 수용하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통합정책이 자칫 동화주의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다문화주의정책은 일련의 법적·제도적 정책을 통해 차별적 요소의 제거와 인종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런던테러가 있기 전까지는 영국의 다문화주의정책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따라서 새로운 통합정책으로 인해 다문화주의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다.

영국에서의 다문화주의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는 지역적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지역적으로는 자발적인 단체인 ‘인종평등위원회’(the Race Equality Councils)가 다문화주의의 확산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 지역 내에서 이민자를 관리했던 기구는 ‘공동체관계 위원회’(Community Relations Councils)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이민자 문제가 지방정부의 업무로 전환되었다. 특히, 이들 이민자들이 사회적 약자이며 소수자로서 정당의 주요 지지기반(특히 노동당)이 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이들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영국의 식민지 통치방식이 자치를 인정하는 간접통치방식이어서 영국 내의 다인종·다문화를 관리하는 방식도 지역차원에서의 자율적 관리방식을 택하였다. 다문화주의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정해지면 지방정부는 그것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영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역과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의 외국인 집단정주가 특정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책이 더 적합하였다. 즉, 지방정부가 교육, 주택,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민자가 집단적으로 정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가 이들의 통합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정희라, 2007: 13).

〈표 3-6〉 외국 사례분석 결과

	대만	일본	영국
결혼 이민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300,000명 (1987~2003년) • 중국 및 마카오출신이 약 65% 정도로 다수를 차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260,000명(2005년) • 일본계 브라질인이 다수이며 중국과 필리핀 여성이 다음을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거주 이민자 수는 약 4,800,000명(2001년) • 대부분이 인도, 파키스탄 등 옛 영연방 출신이 다수를 차지함
시대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발전과 동남아시아와의 교류증대로 이민자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 중반 일본 경제의 호황으로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 • 1990년대 들어 외국인의 출입국이 자유로워지고 일본 국적법의 변화로 일본국적취득이 자유로워지면서 외국인의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대전 이후에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하여 이주노동자를 허용 • 1960년대 초까지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시키고 대영제국으로서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영연방 국민의 이주를 허용함

	대만	일본	영국
		주화현상이 두드러졌고 결혼이민자 수가 증가	• 1960년대 이후에는 이주 민법을 통해 이주를 통제
이민 정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의 취업권 보장 • 사회보험(건강 및 재해보험)의 보장 • 저소득층에 한해 공적부조 실시 • 사회적응을 돕는 서비스로 언어교육 및 취업준비교육 등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에는 외국인의 법적인 관리에 주력 •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국인거주자들에게 생활보호나 기타 행정서비스 그리고 각종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주도의 교육 및 주택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영국의 가치(법의 지배, 관용성, 국가와 역사적 유산에 대한 존경 등)를 공유할 것을 포함
특징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국적취득이 어려움 • 대만의 이민정책은 초기에는 동화주의정책을 사용하다가 점차 다문화주의정책으로 전환 • 그러나 결혼이민자들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 • 따라서 결혼이민자정책이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으로 일본의 외국인정책이 배타적이며 소극적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정책화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여 활발히 이루어짐 • 예를 들면, 외국인에게 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시정에 참여케 하며 공생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종관계를 개선하며 대신 영국의 가치를 공유할 것으로 강조 • 자칫 이러한 통합정책이 동화주의로 이해될 여지가 있음 •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적인 관리방식으로 이루어짐 • 즉,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지역과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짐

4. 시사점

외국인 이민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각국의 외국인 유입배경과 현황이 다른 이유는 각국이 처한 상황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다문화주의정책의 내용

과 실천방식의 차이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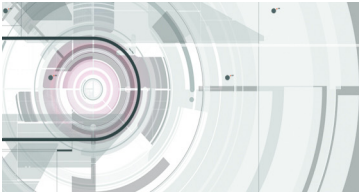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사례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문화주의정책이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 보다는 지방정부나 지역의 자발적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선택되고 실시되며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협력하는 운영시스템을 유지할 때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표 3-6> 참조).

또한 실질적으로 다문화주의정책은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국사례는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은 것이기는 하나 다문화주의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벤치마킹이 가능하다. 다문화주의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에게 기회의 평등과 정치·경제·사회적 평등이 보장되며 국민들로부터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때 실질적인 효과가 높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정책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어느 사회나 질서유지와 국민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 다문화주의가 자칫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정책 즉, 다문화가 공생하는 형태를 유지하더라도 또한 국가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외국 사례는 모두 결혼이민자정책이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칫 동화주의정책과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대만, 일본, 영국에서의 결혼이민자정책은 이들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결혼이민자들이 조화롭게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될 수 있도록 각 종 언어 및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결혼이민자정책이 점차 다문화주의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미국과 같이 애초에 이민자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국가에서 이민자들의 문화적 정체

성을 인정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다문화주의정책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결혼이민자를 유입하는 국가의 정체성이나 역사 및 전통에 따라 그들의 이민정책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현황과 문제점

제1절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체계 및 지원정책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 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이 다르고 예산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질적 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직접 방문하여 결혼이민자담당 공무원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장에서는 지역별 결혼이민자 구성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결혼이민자 지원체계, 결혼이민자 지원 서비스내용, 예산 등 결혼이민자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특성에 따른 결혼이민자 지원내용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의 문제점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례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으로는 경기도 안산시,²³⁾ 도·농복합지역으로는 충북 제천시, 농촌지역은 전북 장수군이다.

23) 안산시를 대도시지역으로 분류하여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안산시의 인구가 2007년 7월 현재 약 73만 4천명이다. 안산시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외국인거주자가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시책 및 서비스 내용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앞서 가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다. 또한 안산시의 결혼이민자 지원시책과 지원체계 등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이다.

제2절 결혼이민자 지원 현황

1. 도시지역 : 안산시를 중심으로

가. 개요

안산시의 전체인구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약 73만4천명으로 외국인 수는 총 2만9천6명으로 남성이 16,428명, 여성이 11,246명이다. 이 중 국제결혼자는 3,034명이며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2,527명이다.

〈표 4-1〉 안산시 국제결혼가정 수

합계	외국인 남편	외국인 부인
3,034명	570명(18.8%)	2,527명(81.2%)

자료 : 안산시 내부자료(2008)

안산시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 국적별 분포는 중국 조선족(41.4%), 중국 한족(26.2%), 베트남(8.9%), 일본(8.7%), 필리핀(3.4%), 몽골(2.6%), 태국(2.3%) 등이다(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한편 안산시의 보육시설,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007년 4월 현재 460명이다.

〈표 4-2〉 안산시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이용 현황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460명 (%)	230명 (50)	37명 (8)	164명 (35.7)	26명 (5.7)	3명 (0.6)

자료 : 안산시 내부자료(2008)

한편 안산시는 안산이주민센터, 천주교 수원교구외국인노동자 사목센터, 안산조선족교회, 소금밭교회, 안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중국동포의 집, 안산선교교회, 안산안디옥국제선교회, 보문선원, 온누리센터, 동산교회선교센터 등 10개의 기관에서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를 위한 봉사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돌보는 주요 대상국가 외국인은 한족, 조선족, 몽골인,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러시아, 나이지리아인 등이며, 주요사업은 상담, 한글교육, 의료지원, 귀환프로그램, 쉼터운영 등이다.

나. 결혼이민자 지원 담당인력과 업무

안산시는 외국인주민센터가 2008년 원곡동에 설립되어 안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센터 소장을 비롯하여 16명의 직원이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직원이 결혼이민자 지원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특히 1명의 담당자가 결혼이민자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별도로 직원 1명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4-3〉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주요업무

구분	주요 업무
소장	• 외국인복지과 업무총괄
담당	• 외국인관련시책추진 및 지원기반구축 • 거주외국인다문화교류센터 운영 및 시설물관리 등
직원	• 다문화체험 특구지정 외국인 정착 지원 등
직원	• 외국인드림센터 다문화체험특구 등
직원	• 다문화교류센터 시설물관리 원곡동 전선지중화사업 외국인 • 고용기업체 환경개선사업 아시아문화체험 일일교실
직원	• 서무, 보안, 주간업무 회계, 예산, 물품관리
담당	• 지구촌 문화행사

구분	주요 업무
직원	• 외국인 문화사업 추진
직원	• 외국인 문화체육사업 추진
직원	• 지구촌문화
담당	• 교육홍보 종합계획 수립 언론보도 및 홍보 등 대외협력
직원	• 한글, 기술(귀환)프로그램 운영 언론보도 등 시책사업 홍보
직원	• 다문화 교육 거주외국인 법률지원 소식지 발행
직원	• 홈페이지 구축 외국인관련 인터넷 언론기사 수집
담당	• 외국인인권업무 총괄 결혼이민자업무 총괄
직원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통역지원서비스 등
직원	• 외국인응급지원

자료 : 안산시 내부자료(2008)

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및 예산

2007년 안산시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보면 크게 국제결혼가정지원사업과 아동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국제결혼가정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한글교재배부, 외국인임산부 분만비 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아동지원사업은 다문화이해교육사업, We Start 외국인자녀 양육지원사업 등 2개 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92,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본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비 32,000(천원), 도비 8,000(천원), 시비 52,000(천원)이 지원되었고, 사업별로는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이 5개 사업으로 68,000(천원), 국제결혼가정의 아동지원사업이 2개 사업으로 24,000(천원)이 소요되었다.

〈표 4-4〉 안산시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및 예산(2007)

구 분	사업 개요 및 실적	부 서
국제 결혼 가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1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2회 주2회 40주 • 한글교육, 문화체험, 요리교실 등 • 예산: 14,000천원 	외국인 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교재 배부: 350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4,000천원 	외국인 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가정지원 위탁사업: 연인원 1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통·번역 등 6개 과정 50명 • 건강한 가정만들기 프로그램: 16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캠프 • 예산: 14,000천원 	외국인 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임산부 분만비 지원: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주외국인 임산부 • 예산: 4,000천원 	단원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4개월 • 사업대상: 결혼이민자 자녀가 있는 35가정 • 도우미 7명이 각 가정을 방문, 다문화 이해교육, 아동 양육 상담 등 • 예산: 32,000천원(국비 100%) 	가족 여성과
아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11회 4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외국인이 학생들에게 자국 문화 소개 • 예산: 4,000천원 	외국인 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 Start 외국인자녀 양육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6개월 • 대상: 법정 및 차상위 결혼이민자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 아동을 위한 방문 교육프로그램, 부모교육, 외국인자녀 전담 보육 시설 보육프로그램 지원 • 예산: 20,000천원(도비 40%, 시비 60%) 	가족 여성과

자료 : 안산시 내부자료(2008)

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 현황

안산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한 지역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8년도에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서의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시설로서의 운영혁신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목적은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꾀하며, 여성결혼이민자의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을 통한 이주여성과 자녀들의 생명존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과 문화활동을 통한 한국사회의 적응을 지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주요사업내용은 한국어교육, 한국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자조집단, 정서지원, 가족역량 강화, 다문화인식 개선, 찾아가는 한글서비스교육,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표 4-5〉 안산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 결혼이민자 지원프로그램, 결혼이민자 피해구조 지원, 상담 등	50,000천원 - 국 35,000 - 도 7,500 - 시 7,500	
	한국어 교육		• 목적: 결혼이민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안정적 조기정착 • 내용: 한국어 초·중급반 • 방법: 주2회 20명씩 수업
	한국사회 이해 교육		• 목적: 한국사회이해를 통한 한국사회 안정적 조기정착 • 내용: 한국사회에 관한 이해교육 • 방법: 분기별 실시
	가족 교육		• 목적: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사회적응 지원 • 내용: 남편교육, 부부교육, 가족캠프 • 방법: 교육 및 집단상담, 1박2일 캠프
	상담		• 목적: 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인권보호 • 내용: 일반상담, 전문상담, 미술치료 • 방법: 초기상담후 전문적개입여부 판단
	자조 집단		• 목적: 심리적 안정감 획득, 상호유대감 형성, 결혼이민자 자치력 향상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생활나누기, 자아실현하기, 멘토링되어주기, 여성의식화 방법: 자조모임 구성→자체리더 양성→자체동아리 구성 	
정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문화체험, 멘토링을 통한 사회통합 내용: 엄마나라 이해하기, 아빠나라 이해하기, 야외활동프로그램 방법: 다문화아동, 또래친구, 멘토 1:2멘토링 활동 	
가족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취업교육 및 일자리연결 내용: 중국어지도사과정, 원어민영어지도사과정 방법: 취업 의지가 있는 이민자여성 30명 연간교육 	
다문화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사회적 편견해소, 문화적 다양성 인정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확산 내용: 결혼이민자 여성문화 한마당, 여성 백일장대회 방법: 거리캠페인, 다문화공연, 문화한마당, 백일장대회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소통의 어려움, 한국생활 조기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글교육지도사를 파견, 교육 및 전문상담 	68,666천원 - 국 48,066 - 도 10,300 - 시 10,300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1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 	135,000천원 - 국 64,500 - 도 20,250 - 시 20,250

자료 : 안산시 내부자료(2008)

2. 도·농복합지역 : 제천시를 중심으로

가. 개요

제천시의 전체 인구는 2008년 1월 현재 136,218명이다. 이중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총 235명으로 중국 102명(43.6%), 베트남 54명(23.1%), 필리핀 38명(16.9%), 일본 27명(9.2%), 태국 7명(3.1%), 몽고 4명(1.5%) 순이며, 이밖에 캄보디아, 우즈

베키스탄인 등이 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여성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여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결혼이민자 지원 담당인력과 업무

제천시의 결혼이민자 지원조직으로는 사회복지과 여성유소년팀에 전담직원 1명을 배치하여 직접 지원하는 사업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업무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원, 결혼이민자 부부연수사업, 직업교육사업 등이 있다.

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및 예산

제천시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에는 국비지원을 받아 결혼이민자가족센터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한글교육 중심의 방문교육사업,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도, 놀이지도, 상담 등이 있다. 한편 시청에서 직접 담당하는 사업으로는 부부연수사업²⁴⁾과 취업을 돕기 위한 직업교육사업으로 연 20명을 대상으로 생활양재교육, 멘토링제 운영사업이 있다. 이밖에 농업정책팀에서 농촌총각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총각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²⁵⁾

제천시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초기단계로서 이들의 의사소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글교육지원과 가정 내에서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부부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이들이 겪는 각종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상담원 배치 등의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2008년도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각종 사업과 예산은 다음의 <표 4-6>과 같다.

24) 1박2일 기간으로 2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총 6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5) 1년에 1세대 당 500만원씩 다섯 가구를 대상으로 총 2500만원을 결혼식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표 4-6〉 제천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원사업 및 예산(2008)

(단위: 천원)

사업명	지원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41,000	161,700	34,650	44,650
센터운영비 지원	50,000	35,000	7,500	7,500
한글교육 지도사 지원	61,000	42,700	9,150	9,150
아동양육지원	120,000	84,000	18,000	18,000
각종교육 프로그램 지원	10,000			10,000

자료 : 제천시 내부자료(2008)

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현황

제천시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인력 배치와 사업비 지원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천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제천시 중앙로 2가 88-13번지에 위치한 제천외국인한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2007년 3월 2일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1억원을 지원하여 5월 19일에 개관하였고, 직원은 센터장, 사무국장, 방문상담전문요원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결혼이민자의 센터이용 등록자수는 130명이며 하루 평균 90명 정도가 이용하여 그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7년도에는 3천만원을 지원하여 센터운영 및 각종 교육사업을 하였고, 2008년에는 2억4천1백만 원을 지원하여 각종 교육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교육, 2세 교육을 위한 놀이방 운영, 한국문화 이해, 요리교육, 임신육아교육, 컴퓨터교육, 민화, 풍물놀이, 문화탐방 및 출신 국별 자조모임 등이 있다(<표 4-7>참조).

〈표 4-7〉 제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

구분	사업내용
교육사업	• 한글교육, 문화적응교육, 컴퓨터교육, 임신·육아교육, 직업교육, 가족소양교육
상담사업	• 가족상담, 성폭력상담, 가정폭력상담, 생활법률상담
자조집단사업	• 친구아, 수다떨자
자녀지원사업	• 자녀놀이방, 지구별 작은 도서관

자료 : 제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내부자료(2008)

한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교육과정 중 한글수업과 생활요리 및 전통교육 과정이 있으며 이를 교육내용별·시간대별로 살펴보면 <표 4-8>과 같다.

〈표 4-8〉 제천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교육과정

교육내용별				교육내용	
한글 수업	정 규 반	월 ~ 금	왕초보-오전	(10:30~12:30)	• 한국어수업(월, 금): 한국생활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표현을 다양하게 익힌다.
			왕초보-오후 I	(13:00~15:00)	
			왕초보-오후 II	(13:00~15:00)	
			초급 I	(13:00~15:00)	
			초급 II	(13:00~15:00)	
			중급-오전	(13:00~15:00)	
			중급-오후	(20:30~22:00)	
			고급	(15:00~16:00)	
	목	야간반	(15:00~16:00)	•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회화를 중심으로 익힌다.	
특별 반	금	초등연구반 (고급)	(15:00~16:00)	•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을 직접 보고, 익힌다.	
	화	한국어능력 시험준비반	(15:00~16:00)	• 어휘/문법 • 이해(듣기/읽기) • 표현 (말하기/쓰기)	

			교육내용별	교육내용				
생활 요리 및 전통 교육	특 별 수 업	수 요 일	1 주	(10:30~12:00)	• 종이접기			
				(12:00~13:30)	• 생활요리			
			2 주	(10:00~11:00)	• 자조모임			
				(11:00~12:00)	• 문화수업			
				(12:00~13:00)	• 생활요리			
		3 주	(10:30~12:00)	• 북스타트				
			(12:00~13:30)	• 생활요리				
		4 주	(10:30~12:00)	• 임신육아				
			(12:00~13:30)	• 생활요리				
		5 주	(10:30~12:00)	• 소방안전교육(응급처치, 화재예방)				
		화	첫 1주	(10:30~13:00)	• 화(중·고급반 선착순 10명)		매주 3시간	
			매 주	(10:00~13:00)	• 이·미용수업(선착순 20명)			
		수	매 주	(12:30~15:30)	• 컴퓨터(중·고급반 선착순 10명)		매주 2시간	
		목	매 주	(11:00~12:00)	• 풍물(선착순 20명)		매주 1시간	

자료 : 제천시 내부자료(2008)

3. 농촌지역 : 장수군을 중심으로

가. 개요

장수군의 총인구는 2008년 10월 현재 23,930명으로 이중 156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필리핀 56명, 베트남 30명, 중국 30명, 일본 21명, 캄보디아 11명, 태국 4명, 인도네시아 2명, 몽골 2명 순이다.

〈표 4-9〉 장수군 결혼이민자 거주현황(2008. 10 현재)

출신 국가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태국	캄보 디아	인도네 시아	몽골	계
거주 자수	30	56	30	21	4	11	2	2	156
비율	19.2	35.9	19.2	13.5	2.6	7.0	1.3	1.3	100.0

자료 : 장수군 내부자료(2008)

나. 결혼이민자 지원 담당인력과 업무

장수군에서 결혼이민자 관련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의 6급 여성아동담당자 1명과 7급 1명이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결혼이민자지원센터 특화사업 지원,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운영 등이다.

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및 예산

장수군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결혼이민자가족 취업을 위한 마사지 교육,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특화사업,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운영 등이 있다(<표 4-10> 참조). 마사지 교육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마사지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케 함으로써 취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특화사업 지원은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학습 지도 및 다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생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글교실 운영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생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표 4-10〉 장수군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08 예산 (천원)			
		총액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민간자부담 등)
결혼이민자 가족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 년·월: 2008년 7월~8월 • 대상: 결혼이민자 • 방법: 민간경상보조 • 사업설명: 결혼이민자에 대한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케 함으로써 취업 기반을 마련 	10,000	6,000	4,000	72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특화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 년·월: 2008년 8월~12월 • 대상: 결혼이민자 자녀 • 방법: 민간경상보조 • 사업설명: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 및 다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생활 정착 도모 (학습지도, 엄마나라배우기, 체험프로그램) 	9,000	4,500	4,500	-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 년·월: 2008년 4월~11월 • 대상: 결혼이민자 • 방법: 민간경상보조 • 사업설명: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글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 생활 적응능력 배양 	17,250	-	16,000	1,250

자료 : 장수군 내부자료(2008)

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현황

2008년 장수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영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총액은 261,664(천원)이며, 국비 175,389(천원), 시도비 59,183(천원), 시군구비 27,083(천원)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11>과 같다.

〈표 4-11〉 장수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 및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액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계	261,664	175,389	59,183	27,083	9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50,000	35,000	7,500	7,500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32,109		32,100		9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방 문지원사업	100,555	70,389	15,083	15,083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특화사업지원	9,000		4,500	4,500	
영농사업	50,000	50,000			
육아정보 나눔터 설치	20,000	20,000			

자료 : 장수군 내부자료(2008)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지원 사업내역을 보면, 한글교육 및 문화이해 교육사업 실시, 자녀교육지도, 가족상담, 다문화인식개선 노력 등이 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기능보강 사업내용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컴퓨터 및 프린터 등 기구구입이 있다. 결혼이민자가족방문사업은 방문교사가 직접 이민자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양육교육서비스 및 여성이민자의 한국어교육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각 각 한국어교육 15가정, 아동양육지원 24 가정을 방문하여 총 78개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 특화사업으로서 자녀 20명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및 다문화교육을 통해 한국생활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영농사업은 농촌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미래영농교육 실시,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론교육, 영농교육 실습, 농산물가공기술 체험, 영농정

보화교육 등이다. 이밖에 12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다문화가족의 육아상담 및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정보교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장수군의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한 한글교육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조기집합교육과 방문교육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표 4-12> 참조). 집합교육이 상반기에는 4월에서 7월까지, 하반기에는 8월부터 11월까지 장수군내 결혼이민자 8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방문교육은 상반기에는 3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하반기에는 8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11개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4-12〉 장수군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한 한글교육 현황

구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집합교육	방문교육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 4월~7월 하반기 : 8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3.10~7.27 하반기: 8.4~12.21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수(오전10:00-12:00)/2개반 토(14:00-16:00)/1개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양육: 4가정/주2회/16시간 한국어: 3가정 /주2회 /12시간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1가정 방문교육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수군내 다문화가정 여성 8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수 : 39가정 (아동양육 24가정, 한국어 15가정) 진안 : 39가정 (아동양육 24가정, 한국어 15가정) 무주 : 33가정 (아동양육 24가정, 한국어 9가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기초(화·수) 한글중급(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교육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강사: 3명 보조강사: 2명 ※ 한국어양성과정 수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지도사 13명 - 아동양육 지도사 18명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교육 예산 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백만원(국70%,도15%,군15%) ※ 진안군·무주군 200백만원

자료 : 장수군 내부자료(2008)

제3절 결혼이민자 지원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

첫째, 외국인 지원부서의 분리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및 갈등의 발생이다.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주관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정책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외국인근로자 담당부서와 결혼이민자 담당부서의 분리에 따른 외국인종합업무 수행에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서 외국인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및 업무협조를 부탁하였을 때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경우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으며 중앙부처의 지침전달 시, 문서보관소에서 어느 부서로 서류를 전달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둘째, 결혼이민자 지원업무 부서명의 차이로 혼란이 야기된다. 즉, 결혼이민자 지원담당(계, 팀)이 소속된 부서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어 결혼이민자나 지역주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천시는 사회복지과 여성유소년팀에서, 장수군은 자치행정과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 및 지역주민들에게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및 결혼이민자의 편의를 위해서 결혼이민자 지원부서 명칭의 통일이 필요하다.

셋째, 결혼이민자지원부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및 인식 부족이다. 결혼이민자 지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이동이 자주 단행되어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외국어실력이 부족함은 물론 결혼이민자 지원부서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많은 부서로 인식되어 업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결혼이민자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다른 부서로 전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부 농촌지역 공무원들의 경우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지역특성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위한 특

별한 시책이나 사업이 없고 예산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및 프로그램 부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결혼이민자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중심의 위탁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결혼이민자 담당 부서의 독자적인 사업은 거의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대상 지역인 안산시를 제외한 제천시와 장수군 모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²⁶⁾ 이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⁷⁾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한글교육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한글교육지도사 지원, 한글교실 등이 있고, 아동양육지원사업, 다문화교육이해사업, 전통교육 등이 주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한글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이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지역특성에 따른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모든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특성과 결혼이민자 출신국가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정책도 제한적으로 주로 문화·교육·복지서비스에 한정되어 추진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글교육 시간이 너무 짧다. 한국어는 결혼이민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로서 자녀는 대부분 엄마를 통해 모든 것을 배우며 한국어가 서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말이 늦고 학교에 들어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

26) 전체 인구수 및 결혼이민자수, 재정력 등을 감안할 때 제천시나 장수군 모두 훌륭한 결혼이민자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특수한 지역으로서 단지 사례지역간 평면적인 비교를 하여 언급하였다.

27)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없는 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가 이를 대신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민간단체에게 민간위탁시켜 결혼이민자를 돕고 있다.

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전국 80곳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의 대부분을 방문교사제도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방문 수업기간은 5개월로, 일주일에 2회, 1회에 2시간의 시간으로, 3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단 1회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80시간의 한국어 수업으로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의 엄마와 아내로 살 수 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짧은 시간으로 한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여섯째,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기회 부족이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는 초기 결혼이민자들은 우선적으로 한국어가 서툴러 이웃 주민들과 어울리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웃들도 피부색이 다른 결혼이민자에 대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 간의 교감과 각 국가 간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쉽게 교류하며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에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웃 주민으로서 교류를 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는 한국과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국민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2. 운영적 측면

첫째, 결혼이민자 지원행사가 중복적·경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기관에서 결혼이민자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기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경쟁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결혼이민자 지원행사가 열리게 되고 이로 인해 행사의 효과가 반감되고 예산의 낭비가 발생한다. 한편 결혼이민자들이 여러 행사에 자주 참석하다 보니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의 수업에 자주 빠지게 되어 집중력에 문제가 생겨 교육능률이 저하되고 교과진도에 차질이 발생한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은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에서 주는 선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선물이 없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참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종 행사는 1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향이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입장에서 외국인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기 보다는 행사주최측의 생색내기 혹은 보여주는 전시성 행사가 많다. 즉, 당사자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행사주최측의 편의만을 고려한 동원식의 행사가 많으며, 각종 행사에 동원되다 보니 생계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를 위한 행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행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광지 순례, 짬짬방 방문, 회식 등 유흥에 치우치므로 건설적인 자립기반 구축에 필요한 교육 등의 딱딱한 프로그램은 기피하고 향락적인 생활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으며 남녀가 참여하는 향락성·오락성 행사에서 도가 넘치는 경우, 가정불화나 가정파탄의 사례도 발생하곤 한다.

둘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비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중앙정부가 50-70%, 지방자치단체에서 30-50%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결혼이민자관련 시민사회단체나 종교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에서 꾸준히 전문성을 쌓아온 단체 대신 결혼이민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사회에 정치적 영향력이 큰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 퇴직공무원이 대표로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확한 통계자료 축적의 어려움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행정기관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담당자에게 마음을 터놓지 않고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상담원들이 맨투맨 방식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으로 친숙한 관계를 조성한 후 실태조사 및 교육에 참여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에 대한 실태조사 시, 가족 특히 남편의 비협조 또는 거부로 인해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실태조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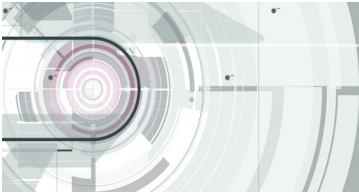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지원부서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와의 갈등 발생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고 사업을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근본적인 욕구, 생활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더 받기 위해 실적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이민자가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물론 결혼이민자 개개인에 대한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비영리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규모가 점차 커지다 보면 영리사업으로의 전환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섯째, 가족의 비협조로 결혼이민자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족이 적극적이고 열린 사고를 가진 가정은 관련정보를 취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가정은 관련정보 취득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남편 등 가족의 비협조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가입 또는 가정방문 한글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여섯째, 일부 언어통역의 어려움이다. 결혼이민자 중 영국, 일본, 중국 등 일부 국가가 출신자를 위한 통역은 일반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어서 쉽게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의 일부 국가는 지역 내에서 통역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이들을 위한 사업추진은 물론 가정 불화, 교통사고 등 사고발생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조속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표 4-13〉 결혼이민자 지원의 문제점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지원부서의 분리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갈등발생 • 결혼이민자 지원업무 부서명의 차이로 혼란 야기 • 결혼이민자지원부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인식 부족 •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프로그램 부족 • 단기간의 한글교육 운영 •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기회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적·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지원행사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기능·역할을 비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실태 • 정확한 통계자료 축척의 어려움 • 결혼이민자지원부서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간의 갈등 발생 • 가족의 비협조에 따른 결혼이민자 지원서비스를 수혜받지 못하는 상황 • 일부 언어통역의 어려움



제5장 결혼이민자의 의식조사 분석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결혼이민자에게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으로서 결혼이민자들의 기본적인 의식이나 만족도조사는 더 나은 지원과 서비스제공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장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의식조사를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민원친절도와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절 조사설계

1. 자료수집과 조사방법

설문조사대상의 모집단은 인구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실질 조사대상자인 결혼이민자는 각 조사대상지역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본 센터에서 교육을 받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지역 중 인구 50만명 이상은 도시지역, 인구 10만명 이상의 지역으

로 도시와 농촌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중소도시), 인구 10만명 미만은 농촌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도시지역은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경기도 안산시, 제주도 제주시를 대상으로, 도·농복합 지역은 강원도 강릉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를 대상으로, 농촌지역은 전북 장수군, 경북 예천군, 전남 영암군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내용은 조사대상지역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제출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를 미리 파악하여 같은 내용의 설문을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영어(필리핀), 몽골어, 태국어 등 6개 국어로 번역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²⁸⁾

설문조사는 부산시를 포함한 총 10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751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총 389개의 유의미한 설문지가 회수되어 51.8%의 회수율을 보였다. 먼저 지역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부산 51개, 대구 38개, 안산 37개, 강릉 21개, 제천 39개, 공주 7개, 장수 21개, 영암 62개, 예천 24개, 제주 89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출신국가별 결혼이민자 응답자는 베트남, 필리핀, 중국(한족), 조선족, 몽골, 태국 순이다(<표 5-1> 참조).

〈표 5-1〉 결혼이민자의 의식조사 응답결과

	부산	대구	안산	강릉	충북 제천	충남 공주	전북 장수	전남 영암	경북 예천	제주	합계
조선족	2	2	10	9	6	0	3	7	1	13	53
한족	15	10	4	2	12	2	6	6	3	8	68
베트남	26	23	5	6	17	0	8	26	19	43	173
인도 네시아	0	0	3	0	0	0	0	0	0	0	3

28) 부산시의 경우 일본인,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있었으나 한글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한글 설문서로 답변하였다

	부산	대구	안산	강릉	충북 제천	충남 공주	전북 장수	전남 영암	경북 예천	제주	합계
필리핀	1	2	5	4	4	5	3	10	0	20	54
몽골	0	1	5	0	0	0	0	8	0	2	16
태국	1	0	5	0	0	0	1	5	1	0	13
기타	6	0	0	0	0	0	0	0	0	3	9
합계	51	38	37	21	39	7	21	62	24	89	389

설문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진이 직접 설문지를 가지고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부 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담당자가 해당지역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나오는 결혼이민자에게 설문조사 취지를 설명을 한 후, 설문지를 결혼이민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장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이해관계 및 어려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언어적인 것이 가장 크다. 한국어에 대한 습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에는 언어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교육이라든지 취업과 지역사회에의 참여에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라든지 기타 지원정책이 제대로 전달되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수혜대상인 이들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앞으로의 희망사항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들의 의식조사 결과의 분석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전체 설문 내용 중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총괄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출신 국가와 그들이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그들의 의식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실태에 대하여 다섯 가지의 유형에 따라 단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2> 참조). 총 33가지의 설문항목을 결혼이민자들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중심으로 한 인적사항유형, 자신들의 한국어교육과 자녀의 교육문제를 포함하는 교육유형, 가정경제와 가정문제를 포함하는 가정생활유형, 이웃주민과의 관계를 통한 지역공동체에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역공동체유형, 결혼이민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비스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²⁹⁾

〈표 5-2〉 설문항목의 구성과 내용

설문항목		설문내용
인적 사항	개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신국가 • 배우자와의 결혼방법 • 응답자의 연령 • 응답자의 직업 • 배우자의 연령 • 한국인과의 결혼 사유 • 결혼기간
교육	한국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습득 방법 • 한국어를 잘 못해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
	자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 자녀들의 학습능력 및 성적 수준 • 자녀들의 학업지도 및 지원의 정도

29)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언어문제, 자녀교육, 가정생활, 문화적 차이 등을 지적하고 있다(설동훈, 2004; 문경희, 2006; 김갑성, 2006).

설문항목		설문내용
가정생활	가정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가정의 월수입 • 한국과 모국에서의 경제적인 생활수준 비교 • 현재 한국에서의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 취업희망 여부 • 배우고 싶은 기술
	가정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 시부모와의 갈등 경험 유무 • 배우자(남편)의 폭력 경험 유무 • 배우자(남편)의 폭력 사유
지역 공동체	이웃주민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 주민과의 친밀 정도 • 이웃 주민과의 상호교류 정도 • 이웃 주민과의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 한국생활에서 힘든 점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에서의 민원업무 처리 경험 유무 •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친절도 • 민원업무를 처리과정에서의 불편한 점 •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에게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도움 경험 유무 •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로부터의 도움 내용 •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대응방법

둘째,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가에 따른 차이점 분석이다. 여기에서는 빈도분석과 더불어 카이스퀘어(Chi-square) 검증기법을 이용하여 출신국가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의 의식이나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의 결혼이민자들의 우리사회에의 유입은 그 출신국가별로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물론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이 다수이지만 그밖에 동구 및 중앙아시아 출신들도 많다. 이들 다양한 지역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은 우리사회에 적응해 가는 속도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언어를 습득하는 속도에 차이가 생길 경우 자녀의 교육문제라든지 취업과 사회참여에

대한 접근성 등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³⁰⁾ 출신국가에 따라 외모가 차이가 나서 그들의 자녀들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게 되고³¹⁾ 따라서 학교에서의 적응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조영달, 2006). 또한 출신국가에 따라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공동체와의 적응 속도, 그리고 서비스 주체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국내거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 분석이다. 여기에서도 빈도분석과 더불어 카이스퀘어(Chi-square) 검증기법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결혼이민자들의 거주지역의 차이가 그들의 의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현재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들의 거주지역 분포를 보면 약 70%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정정희, 2008: 92). 결혼이민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은 이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에서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의 조건이나 능력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크게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세 유형에 따른 지역의 차이점은 도시적 기능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각 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이 접근성의 용이함과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업무량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의 수준과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거주하는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 주어야 할 서비스의 내용도 다를 수 있다.

30) 조혜영·서덕희·권순희(2008: 109-110)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 적응도가 어머니의 출신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 장혜경(2006)에 따르면 한국어에 익숙한 조선족과 일본 및 기타 다른 지역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의 언어적 차이가 현저하고 이러한 차이가 결국 가정내의 불화 및 사회적응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31) 박금주(2008: 14)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17.6%가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집단따돌림을 경험한다고 지적한다.

제2절 분석내용

1. 결혼이민자 의식조사의 총괄분석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출신국가

이번 설문에 응답한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베트남 출신이 173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한족이 68명(17.5%), 필리핀이 54명(13.9%), 조선족이 53명(13.6%) 그리고 이밖에 약 10%가 타지역³²⁾ 출신으로 나타났다.

〈표 5-3〉 응답자의 출신국가

	응답자수(명)	응답률(%)
조선족	53	13.6
한족	68	17.5
베트남	173	44.5
인도네시아	3	0.7
필리핀	54	13.9
몽골	16	4.1
태국	13	3.3
기타	9	2.3
합계	389	100

32)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 이외에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일본, 캄보디아, 헝가리 출신이 포함된다.

2) 연령

전체 응답자들의 연령은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대 및 30대 여성들(57.9%)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21~30세)의 경우 225명(57.9%)이 응답하였으며, 30대(31~40세)는 117명(37.3%)이 응답하였다.

〈표 5-4〉 결혼이민자의 연령

	응답자수(명)	응답률(%)
15~20세	18	4.6
21~25세	140	36.0
26~30세	85	21.9
31~35세	60	15.4
36~40세	57	14.7
41~45세	11	2.8
46~50세	9	2.3
51세 이상	5	1.3
무응답	4	1.0
합계	389	100

3) 배우자(남편)의 연령

결혼이민자의 배우자(남편) 연령대는 응답자들에 비해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의 분포를 보면, 30대(40.6%)와 40대 중반(35.7%)의 배우자 연령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20대의 남편 연령대(21-30세)에서는 1.6%(6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들의 나이는 20대가 약 60%인데 반해 배우자들의 연령대가 30대에서 40대 중반이 약 75% 정도 인 것은 나이 차이로 인한 또 하나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5-5〉 배우자(남편) 연령

	응답자수(명)	응답률(%)
15~20세	0	0
21~25세	1	0.3
26~30세	5	1.3
31~35세	37	9.5
36~40세	121	31.1
41~45세	139	35.7
46~50세	59	15.2
51세 이상	24	6.2
무응답	3	0.8
합계	389	100

4) 배우자(남편)와의 결혼기간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에 대한 응답에서는 70.2%의 응답자가 5년 미만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년의 결혼기간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3~4년의 결혼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9.3% 그리고 1년 이하는 18.8%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 5년간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6〉 배우자(남편)와의 결혼기간

	응답자수(명)	응답률(%)
1년 이하	73	18.8
1~2년	125	32.1
3~4년	75	19.3

	응답자수(명)	응답률(%)
5~6년	35	9.0
7~8년	32	8.2
9~10년	20	5.1
11년 이상	24	6.2
무응답	5	1.3
합계	389	100

5) 현재 배우자(남편)와 결혼 방법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결혼중개업소(35.5%)와 지인을 통해서(34.4%)가 두드러진 응답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사에 의해서도 유사한 응답이 나타났다. 설동훈교수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서 살펴보면 결혼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제결혼중개업체, 종교단체, 지인의 소개, 직접 만남이 그것이다. 그 중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³³⁾

〈표 5-7〉 배우자(남편)와 결혼하게 된 방법

	응답자수(명)	응답률(%)
직접 만남	37	9.5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138	35.5
종교단체를 통해	41	10.5
이는 사람을 통해	134	34.4
기타	27	7.0
무응답	12	3.1
합계	389	100

33) 참고: KBS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왕상환입니다.

※뉴스초점: 국제결혼 이주여성 절대빈곤 절반 넘어(대담: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2005.7.17.오후 12:15~12:30.

6) 결혼이민자 직업

결혼이민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들 중 72.5%가 가정주부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는 농업(7.2%), 회사원(4.1%), 서비스업(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한국어를 잘 몰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은 물론 한국사회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직장생활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8〉 응답자의 직업

	응답자수(명)	응답률(%)
농업	67	17.2
어업	6	1.5
사업(상업)	22	5.7
회사원	120	30.8
서비스업	27	6.9
공무원	17	4.4
무직	24	6.2
기타	94	24.2
무응답	12	3.1
합계	389	100

7) 한국인과 결혼하게 된 이유

외국인 여성이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국이 좋아서(33.4%)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점(38.5%) 때문에 라는 응답이 약 72%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에 가면 경제적 혜택(여유로운)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응답자는 83명(21.3%)으로 나타났고, 본국 친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라는 응답자는 67명(17.2%)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

은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⁴⁾

표면적으로 도출된 결과를 볼 때, 분포율 상에서 나타나는 단순비교의 차원에서는 한국 혹은 한국인 배우자가 좋아서 결혼했다(33.4%)는 점이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로 경제적 혜택(38.5%)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게 된 비율이 한국이 좋아서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선택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선택한 것은 본국에서의 경제적 혜택보다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바람이 결혼으로 투영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표 5-9〉 한국인과 결혼하게 된 이유

	응답자수(명)	응답률(%)
한국에 가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되어	83	21.3
결혼 중개업소의 권유에 의해	22	5.7
한국이 좋아서	130	33.4
본국 친정 집안살림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67	17.2
기타	79	20.3
무응답	8	2.1
합계	389	100

나. 교육

1)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가) 한국어 습득 방법

한국어 습득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34) 설동훈교수팀이 조사한 결과, 외국인여성이 결혼중개업소를 통하여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로는 73%가 “경제적인 이유, 즉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KBS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 뉴스초점: 국제결혼 이주여성 절대빈곤 절반 넘어(대담: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교수), 2005.7.17.오후 12:15~12:30.

지원하는 가정방문선생님의 한글교육을 통해서(35.5%), 주민자치센터의 한글교실(24.4%),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한글교실(13.1%)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 응답결과를 볼 때 응답자의 약 60% 정도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한글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고자 한국어 교육을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에서도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언어습득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10〉 한국어 습득 방법

	응답자수(명)	응답률(%)
가정방문선생님의 한글교육을 통해서	138	35.5
가족 및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서	35	9.0
시민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을 통해	51	13.1
친구 및 동료	8	2.1
주민자치센터의 한글교실	95	24.4
기타	53	13.6
무응답	9	2.3
합계	389	100

나) 한국어를 잘 못해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

결혼이민자가 겪는 언어적 불편, 즉 한국어를 못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응답자의 36.2%가 이웃과의 교류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녀교육의 어려움(25.7%),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획득의 어려움(20.1%) 순서로 응답하였다.

타국의 문화 및 생활양식에 적응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부분이 해당 국가 언어의 습득이다. 해당 국가언어는 곧 문화와 연계되는 첫번째 단계이다. 언어의 불편함을 인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이로 인해 가정 및 이웃과의 교감 또는 교류가 원만하지 않게 된다. 또한 언어적 불편함으로 인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획득이 어렵게 된다.

언어의 불편함으로 인해 생기는 보다 중요한 점은 언어장벽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결혼이민자들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들이 겪는 언어적 어려움이 자녀들을 위한 가정학습 및 가정교육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상태 혹은 능력미비의 담보 상태로 있는 경우,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그들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친밀도가 낮아지게 된다. 조혜영 외(2008)는 이와 같이 한국어의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에서 학업지원을 담당해야 하는 어머니들이 한국어 및 한국사회의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조혜영·서덕희·권순희, 2008).

〈표 5-11〉 한국어를 잘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점

	응답자수(명)	응답률(%)
자녀교육의 어려움	100	25.7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가족 및 이웃과의 교류가 부족함	141	36.2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획득이 어려움	78	20.1
행정기관에 가서 민원서류 등을 발급받는데 어려움	30	7.8
무응답	40	10.3
합계	389	100

2) 자녀교육 문제

가)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응답자는 한국어를 잘 몰라 자녀들의 학습효과가 느리다(17.0%)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다음으로 피부색의 차이로 인해 자녀 스스로가 동료 친구들로부터 고립되는 현상(2.6%) 그리고 엄마의 피부색이 달라 다른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2.8%)가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사항이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차적인 문제로서 교과과정의 학습효과가 느리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어라는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표면적인 측면과 더불어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부족이 결합된 내재적 측면이 동시에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습효과의 부진은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의 경우 그들의 자녀들과 한국어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이해가 낮거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언어적 고충 및 교과학습과정의 부족은 단기적인 문제점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언어능력의 부족과 그에 따른 학습능력 부족은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 및 언어·학습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반면, 피부색에 의하여 문화적 괴리감 및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 및 왕따 등)에 대한 사항은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 및 그들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 및 토착 지역민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숙희(2008)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다문화교육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타문화에 대한 문화적 관용성 부족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거나 수용하는데 있어 미흡하다고 언급하고 있다.³⁵⁾ 특히,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다문

35) ①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5년부터 「Migrant's Arirang」 다문화 대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 행사는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

화교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정규 교과목에 편성되어있지 않음과 더불어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9년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이해교육지도사례집」이 작성·배포되었고 계속해서 중·고등학생들 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12〉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응답자수(명)	응답률(%)
자녀의 피부색이나 얼굴모습이 한국인들과 달라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함	10	2.6
한국어를 잘 몰라 학습효과가 느낌	66	17.0
엄마를 창피해 하고 멀리함	5	1.3
친구들이 엄마의 피부색이 한국인과 다르다고 놀려서 마음의 상처를 받음	11	2.8
무응답	297	76.3
합계	389	100

나) 자녀들의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의 학습능력 및 성적 수준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학습능력 및 성적에 대한 설문에서는 무응답(69.7%), 보통(17.2%), 잘함(8.5%) 그리고 매우 잘함(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습능력 및 성적에 있어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3%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부모들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된 응답이

리사회가 문화소통으로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② 법무부는 재한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먼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정 2007.5.17 법률 8442호]」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20674호]」을 통하여 법률로 재한외국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5월 20일 세계의 날”과 “5월20일~5월26일 세계인 주간”으로 선정하여 다문화 공존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정책접근을 하고 있다.

므로 그들 자녀들의 학습능력 및 성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설문에 응답한 결혼이민자의 관점 및 수준에서 한국어를 비롯하여 학습하고 있는 그들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하여 보통 및 그 이상의 학습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 응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설문에 답하지 않은 약 70%의 응답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답변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노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학습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5-13〉 자녀들의 학습능력 및 성적 수준

	응답자수(명)	응답률(%)
매우 잘함	13	3.3
잘함	33	8.5
보통	67	17.2
못함	5	1.3
매우 못함	0	0
무응답	271	69.7
합계	389	100

다) 자녀들을 위한 학습 및 숙제지원 정도

위 문항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전체 응답자의 67.1%가 답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무응답자는 이 설문 내용에 대해 별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와주지 못한다’에 응답한 비율과 합한다면 응답자의 약 70% 정도는 자녀들을 위해 학습지도를 거의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설문문에 있어 약 30%의 결혼이민자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학습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도와주는 적극성에 비해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가는 본 설문문항과 별개의 부분이다. 효과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로는 곽금주(2008), 김이선 외(2006), 설동훈 외(2006), 정기선 외(2007), 조혜영 외(2008)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남을 연구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녀의 한국어교육 및 학습지도 그리고 학부모로서 참여해야 하는 학교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사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나 결국 결혼이민자의 언어적·문화적 장벽이 물질적 어려움과 더불어 자녀들의 학습지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김이선 외, 2006; 정기선 외, 2007).

〈표 5-14〉 자녀들을 위한 학습 및 숙제지원 정도

	응답자수(명)	응답률(%)
매우 잘 도와줌	30	7.7
약간 도와줌	35	9.0
보통임	51	13.1
거의 도와주지 못함	8	2.1
전혀 도와주지 못함	4	1.0
무응답	261	67.1
합계	389	100

다. 가정생활

1) 가정경제

가) 결혼이민자 가정의 월수입

소득수준에 대한 응답에서는 문항별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100~150만원의 소득수준이 22.1%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

150~200만원(20.1%), 50~100만원(17.7%), 200~250만원(14.4%), 250~300만원(4.9%), 마지막으로 300만원 이상(3.6%) 순서로 응답하였다.

2007년도 말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38만 7천원이다. 이에 비해 조사대상의 다문화가정이 밝힌 월평균 수입은 대체적으로 100~150만원(22.1%)으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가정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5〉 결혼이민자의 월수입

	응답자수(명)	응답률(%)
50~100만원 미만	69	17.7
100~150만원 미만	86	22.1
150~200만원 미만	78	20.1
200~250만원 미만	56	14.4
250~300만원 미만	19	4.9
300만원 이상	14	3.6
기타	30	7.7
무응답	37	9.5
합계	389	100

나) 한국과 모국에서의 경제적인 생활수준 비교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생활이 모국에서의 경제적 여건과 비교하여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답한 응답자들의 분포는 비슷하다(37.8%), 나아졌다(31.4%), 못하다(18.5%)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수준이 모국에서 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수가 약 30% 정도 밖에 안 되는 설문결과는 그들의 한국에서의 생활수준이 애초에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5-16〉 한국과 모국에서의 경제적인 생활수준 비교

	응답자수(명)	응답률(%)
그렇다	122	31.4
아니다	72	18.5
비슷하다	147	37.8
모르겠다	35	9.0
무응답	13	3.3
합계	389	100

다) 한국에서의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한국에서의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50.6%), 만족(21.6%), 불만족(16.5%), 매우 만족(5.4%), 매우 불만족(3.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보통(50.6%)을 기준으로 만족 및 매우 만족에 대한 비율은 27.3%이며,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에 대한 비율은 20.1%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적으로 한국에서의 경제적인 생활이 대부분 매우 만족하지는 못해도 반대로 큰 불만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17〉 현재, 한국에서의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수(명)	응답률(%)
매우 만족한다	21	5.4
만족한다	85	21.9
보통이다	197	50.6
불만족한다	64	16.5
매우 불만족한다	14	3.6
무응답	8	2.1
합계	389	100

라) 취업 희망여부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3.3%가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응답자는 12.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3%가 한국에서 취업희망 의사를 밝힌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이주 목적을 보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컸으며, 현재 자신들의 경제적 조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자신들 가정의 물질적 향상을 통해 모국의 친정경제에도 도움을 주고픈 희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투입비용을 증가시켜 자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또한 워킹맘(working mom)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경제활동의 행위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표 5-18〉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가에 대한 여부

	응답자수(명)	응답률(%)
그렇다	324	83.3
아니다	49	12.6
무응답	16	4.1
합계	389	100

마) 배우고 싶은 기술

한국에서 결혼이민자들이 배우고 싶은 기술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 준 것은 자동차 운전(26.2%)이다. 다음으로 요리사(18.3%), 미용기술(18.0%), 간병인(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량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이민자들 역시 한국사회에

서의 기동성 및 활동성을 위해 필요한 교통수단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운전은 다른 전문적인 기술(미용기술, 요리기술, 간병기술 등) 등과 달리 짧은 시간 내의 자격증(운전면허증) 취득과 동시에 경제활동에 즉각 투입됨으로써 쉽게 경제활동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기술 습득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요리사(18.3%)와 미용기술(18.0%)의 경우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면서 생활의 일부분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전문적인 기술력 확보에 대한 용이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9〉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기술

	응답자수(명)	응답률(%)
자동차 운전	102	26.2
미용기술	70	18.0
수지침	7	1.8
간병인	20	5.1
영농기술	14	3.6
요리사	71	18.3
기타	68	17.5
무응답	37	9.5
합계	389	100

2) 가정불화

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보통(40.4%), 만족(34.2%), 매우 만족(12.3%)의 순서로 의견을 나타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불만족(7.7%), 매우 불만족(0.8%)은 적은 것으로 응답하

였다.

만족하는 면과 불만족하는 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하게 어떠한 점에서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만족하거나 혹은 불만족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표면적인 설문응답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86.9%)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생각하는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0〉 한국에서의 결혼생활 만족

	응답자수(명)	응답률(%)
매우 만족한다	48	12.3
만족한다	133	34.2
보통이다	157	40.4
불만족한다	30	7.7
매우 불만족한다	3	0.8
무응답	18	4.6
합계	389	100

나) 결혼생활 만족도에 대한 출신국가별 분석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응답자들의 출신국가를 비교해 본 결과, 결혼생활에 매우 만족 및 만족하고 있는 응답자의 17.3%가 베트남출신의 결혼이민자들로 나타났다. 이어 필리핀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이 만족 및 매우 만족에 있어서 9.4%, 한족출신 결혼이민자들은 만족 및 매우 만족에서 9.2%를 차지하고 있다.

〈표 5-21〉 결혼생활 만족도에 대한 출신국가별 분석

		응답자의 출신국가								전체	
		조선족	한족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태국	기타		
결혼 생활 만족도	1.매우 만족	빈도	5	9	15	1	12	3	1	2	48
		전체%	1.4%	2.4%	4.1%	0.3%	3.2%	0.8%	0.3%	0.5%	13.0%
	2.만족	빈도	17	25	49	1	23	8	6	4	133
		전체%	4.6%	6.8%	13.2%	0.3%	6.2%	2.2%	1.6%	1.1%	35.9%
	3.보통	빈도	23	26	81	1	14	4	5	2	156
		전체%	6.2%	7.0%	21.9%	0.3%	3.8%	1.1%	1.4%	0.5%	42.2%
	4.불만	빈도	5	7	13	0	3	1	1	0	30
		전체%	1.4%	1.9%	3.5%	0%	0.8%	0.3%	0.3%	0%	8.1%
	5.매우 불만	빈도	2	1	0	0	0	0	0	0	3
		전체%	0.5%	0.3%	0%	0%	0%	0%	0%	0%	0.8%
	전체	빈도	52	68	158	3	52	16	13	8	370
		전체%	14.1%	18.4%	42.7%	0.8%	14.1%	4.3%	3.5%	2.2%	100%

다) 시부모와의 갈등(고부갈등) 경험 유무

시부모와의 갈등여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항목이 갈등이 없다(61.7%)였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비율을 보여 준 것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29.6%)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시부모와의 갈등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갈등이 존재하는 비율이 약 30%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고부간 갈등은 한국인 며느리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부모와의 갈등관계가 있다는 응답(29.6%)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시부모와의 갈등을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문화와의 갈등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고숙희(2008)는 일상 생활문화의 차이와 가족구조의 차이로 시부모와의

갈등관계를 파악하는데,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적 차이와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충돌이 결국 시부모와의 갈등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고부간의 갈등은 심각해질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표 5-22〉 고부간의 갈등 유무

	응답자수(명)	응답률(%)
있다	115	29.6
없다	240	61.7
무응답	34	8.7
합계	389	100

라) 배우자(남편)의 폭력 경험 유무

배우자의 폭력을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폭력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79.4%였으며, 폭력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결혼이민자는 8.5%였다. 이와 같은 설문결과를 많은 신문 및 방송매체에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가정이 갈등과 폭력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보통 가정처럼 부부싸움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언론의 흥미위주의 기사를 내보내는 것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표 5-23〉 배우자(남편)의 폭력 경험 유무

	응답자수(명)	응답률(%)
있다	33	8.5
없다	309	79.4
무응답	47	12.1
합계	389	100

마) 배우자(남편)의 폭력 사유

폭력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결혼이민자가 어떠한 이유로 폭력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응답결과에는 무응답(78.1%)이 다수였다. 다음으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해가 발생한 경우(7.2%), 출신국가의 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해발생(3.3%), 외국인이라고 무시한 경우(2.6%), 친정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2.3%), 시댁식구와의 갈등(2.1%)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언어적 장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해이다. 이로 인해 가정불화 혹은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설문조사 결과로 알 수 있다. 상호간 의사소통의 단절화 현상은 부부간의 이해의 폭을 형성하는데 실패하게 만들고 결국 부부간의 관계악화를 초래하게 되며 이것이 물리적으로 우세한 남편들이 결혼이민자에 대해 폭력행사로 이어지게 된다.

언어적 차이뿐만 아니라 상이한 문화권에 대한 이해 및 인식부족, 타문화에 대한 폐쇄성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화적 갈등은 남편과의 갈등요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경멸로 이어지고 시댁식구와의 갈등관계 역시 문화적 갈등과 충돌이 지속될수록 가정 및 부부사이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표 5-24〉 배우자(남편)의 폭력 사유

	응답자수(명)	응답률(%)
말이 통하지 않아 오해가 발생하여	28	7.2
친정에 돈을 보내는 일로 인해	9	2.3
외국인이라고 무시해서	10	2.6
시댁식구와의 갈등이 발생하여	8	2.1
애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3	0.8
출신국가와의 문화차이에 의한 오해가 발생하여	13	3.3
기타	14	3.6

	응답자수(명)	응답률(%)
무응답	304	78.1
합계	389	100

라. 지역공동체

1) 이웃주민들과의 친밀 정도

이웃 주민과의 친밀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8.1%는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좋음(30.8%), 매우 좋음(13.4%), 나쁨(2.6%), 아주 나쁨(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볼 때, 대체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생각하는 이웃과의 친밀정도는 보통 이상의 좋은 관계(92.3%)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5〉 이웃주민들과의 친밀 정도

	응답자수(명)	응답률(%)
매우 좋음	52	13.4
좋음	120	30.8
보통임	187	48.1
나쁨	10	2.6
아주 나쁨	4	1.0
무응답	16	4.1
합계	389	100

2) 이웃주민과의 상호교류 정도

이웃 주민과의 상호교류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0.6%가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며 상호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24.2%),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9.3%)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8.2%),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3.3%)는 응답은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본 항목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결과(11.5%)에 대한 사항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한국어를 잘 못하여 혼자 집에 있고 싶어 하거나 해당 가정의 폐쇄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26〉 이웃주민과의 상호교류 정도

	응답자수(명)	응답률(%)
매우 잘됨	36	9.3
잘됨	94	24.2
보통임	197	50.6
잘 안됨	32	8.2
전혀 안됨	13	3.3
무응답	17	4.4
합계	389	100

3) 이웃주민들과의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이웃 주민과의 생활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들이 언어적 의사소통에 따른 어려움(59.4%)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출신국가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7.8%)에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앞에서 살펴 본 설문문항들 중에서 가족 및 이웃 주민과의 갈등이 야기되는 원인으로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언어적 장벽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³⁶⁾과 둘째는 출신국가문화와 한국문화에서의 문화적 간극으로 인하여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점이다.

36) 언어장벽에 의해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은 여타 다른 설문 문항(민원업무 처리에서의 불편한 점과 담당 공무원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에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

〈표 5-27〉 이웃주민들과의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응답자수(명)	응답률(%)
말이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잘 안됨	231	59.4
피부색깔이 다르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13	3.3
일이 서투르다고 지역 일(행사)에 참여시키지 않음	6	1.5
출신국가와의 문화차이가 커 이웃 사람들과 적응하기가 힘들	30	7.8
기타	39	10.0
무응답	70	18.0
합계	389	100

마. 서비스

1) 지방자치단체

가) 행정기관에서의 민원업무 처리 경험 유무

지방자치단체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한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68.4%)들은 민원업무를 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민원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4.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므로 행정기관 방문 등 외부활동을 자제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결혼이민자 스스로가 용기가 없어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28〉 결혼이민자의 민원처리업무 경험 유무

	응답자수(명)	응답률(%)
있다	94	24.2
없다	266	68.4
무응답	29	7.5
합계	389	100

나)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친절도

민원업무처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94명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의 친절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친절하다(22.9%), 보통이다(28.71%), 매우 친절하다(20.0%)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불친절 및 매우 불친절하에 대해서는 1.1%의 매우 낮은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현재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결혼이민자들이 행정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친절한 모습으로 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9)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의 공무원 친절도

	응답자수(명)	응답률(%)
매우 친절함	19	20.2
친절함	47	50.0
보통임	27	28.7
불친절함	0	0
매우 불친절함	1	1.1
합계	94	100.0

다)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불편한 점

본 설문문항에 대해서는 민원업무 처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94명중 72명이 답변하였다. 민원업무 처리과정 중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 공무원과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답답하다(의사소통에서의 문제점)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국의 민원처리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응답이 22.2%, 외국어로 번역된 안내책자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15.3%, 결혼이민자의 민원업무처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부재가 13.9%, 묻는 말에 대해 공무원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무엇보다

다 언어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점과 결혼이민자라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이 아직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표 5-30〉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사항

		민원업무 처리시 가장 불편한 점					전체
		1.공무원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	2.한국 민원 처리절차의 복잡성	3.결혼이민자를 위한 민원처리 도우미 부재	4.외국어로 번역된 안내책자 미비	5.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	
민원업무 처리경험 유무	빈도	32	16	10	11	3	72
	전체 %	44.4%	22.2%	13.9%	15.3%	4.2%	100%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한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프로그램으로는 한글교실 운영(36.2%), 외국인을 위한 정보제공 프로그램 강화(11.6%), 외국인 여성(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남편교실 운영(10.5%), 결혼이민자 전문상담교실 운영(4.9%), 이웃주민과 결혼이민자 간 화합프로그램 강화(4.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언어장벽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지역의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습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성과 연계하여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방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언어학습(한국어교육)을 통하여 한국문화의 습득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프

로그그램을 개선 및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국제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여전히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정보 프로그램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으로 결혼을 위해 온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한국사회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구체적이며 광범위한 정보를 접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들 역시,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그들을 위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의 강화에 요구사항이 높다.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그에 대한 홍보 및 지속적인 서비스개선과 강화가 이루어지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겪는 문화충격,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취득 등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31〉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

	응답자수(명)	응답률(%)
한글교실 운영	141	36.2
농기계 조작 및 영농교실 운영	9	2.3
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남편교실 운영	41	10.5
외국인을 위한 정보제공 프로그램 강화	45	11.6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체계 확립 (의료, 방재, 재난 등)	10	2.6
결혼이민자 전문상담교실 운영	19	4.9
이웃 주민과 결혼이민자간 화합 프로그램 강화	17	4.4
기타	16	4.1
무응답	91	23.4
합계	389	100

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들을 위해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자녀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보육원 운영(22.1%), 방과 후 한글습득을 위한 한글교실 운영(14.7%), 방과 후 학습증진을 위한 교과교육교실 운영(과외학습)(12.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본 설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이 자녀들에 대한 보육시설의 제공과 한글교실 및 교과교육교실 등의 학습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무료학습프로그램(한국어교육 및 정규교과과목에 대한 학습프로그램 등)을 운영·실시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당연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위하여 4년간 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³⁷⁾ 이와 같이 정부는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부모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교과학습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단계별 정책을 개발하고,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발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수혜자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환류(Policy Feedback)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가 효과적인 한국어습득 및 각 교과학력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요구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학습교사)가 상호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7)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을 2008년 10월에 발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4년 동안(2009~2012년) 총 7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학습지원 교육정책을 제시하였다. 교육정책에는 ①다문화가정 유아 및 초등학생의 한국어와 기초학력 향상지원, ②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지원, ③다문화교육 기반구축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5-32〉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들을 위해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

	응답자수(명)	응답률(%)
방과 후, 한글습득을 위한 한글교실 운영	57	14.7
일을 할 수 있도록 애들을 돌보아 줄 보육원 운영	86	22.1
방과 후, 학습증진을 위한 교과교육교실 운영	49	12.6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44	11.3
기타	16	4.2
무응답	137	35.2
합계	389	100

2) 시민사회단체

가) 시민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의 도움 경험 유무

결혼이민자가 시민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로 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비율을 보면, 그렇다(49.1%), 아니다(40.9%)의 순서로

교육대상	교육내용
다문화가정의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 인지, 사회, 정서발달 프로그램을 전국 유치원에 보급하여 유아의 발달 상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진행 서울, 경기, 부산 등 다문화가정이 많은 9개 지역에 대해서는 유치원 취학 전, 유아에게 시·도 교육청에서 별도로 선발한 「희망교육사」로부터 1시간의 교육 서비스를 주 3~4회 학습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인지 능력진단 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수준별 보충프로그램에 참여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중등 다문화가정 학생은 예비교사로부터 방과 후, 멘토링(교과 및 숙제지도) 실시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 「자녀행복교실」을 만들어 한글 및 한국문화 이해를 돕는 특별교육을 실시 학기 초 또는 분기마다 1회씩 상담주간을 마련하여 자녀의 학교생활 등을 상담 한국어가 미숙한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는 자원봉사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학교생활 안내책자를 다언어(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로 제작 및 배포

응답하였다.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보다는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3〉 시민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로부터의 도움 경험 유무

	응답자수(명)	응답률(%)
있다	191	49.1
없다	159	40.9
무응답	39	10.0
합계	389	100

나) 시민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로부터의 도움 내용

시민단체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위의 문항에서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191명중, 77.4%가 한국어교육에 대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나머지 소수의 응답으로 컴퓨터 교육(8.9%)과 개인 고민상담(5.2%)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한국어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로부터도 한국어교육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단체들의 오랫동안 축적된 교육경험과 결혼이민자와 단체운영자와의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학교 등)을 통한 한국어교육의 혜택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한국어습득을 위한 정부차원의 서비스가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34〉 시민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로부터의 도움 내용

	응답자수(명)	응답률(%)
한국어 교육	148	77.4
개인 고민상담	10	5.2
자국출신 결혼이민자와의 만남의 장소 제공	8	4.2
컴퓨터 교육	17	8.9
의료지원	1	0.5
애들 돌보아 줌	3	1.5
인권 교육	1	0.5
무응답	3	1.6
합계	191	100.0

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대응방법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점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많은 비율이 같은 국가출신의 결혼이민자와의 상담(31.6%)과 참는다(24.2%)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로 같은 국가 출신의 친구와 상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행정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상담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5〉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

	응답자수(명)	응답률(%)
참는다	94	24.2
시민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의 상담원을 찾아 상의함	38	9.8
같은 국가출신의 결혼이민자와 상의함	123	31.6
지역내 자치단체 청사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의 상담원을 찾아 상의함	30	7.7

	응답자수(명)	응답률(%)
기타	50	12.9
무응답	54	1.9
합계	389	100

2. 출신국가별 결혼이민자 의식분석

본 절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출신지역에 따른 의식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는 자신들의 출신 국가에 따라 한국사회에의 적응력이라든지 어려움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언어나 피부 색깔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 등에 차이가 있을 때 그들의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어려움과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크게 아홉 가지로 출신국가를 구분하고 있다: 조선족, 한족,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태국, 기타. 이 중에서 기타 지역에서 온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약 2%에 불과하다. 본 절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출신국가에 따라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의 차이, 자녀교육에 있어서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한국생활에서의 적응력 과 만족도, 지역사회에의 참여와 교류정도, 지방자치단체에게 바라는 서비스의 내용 등이다.

가. 한국생활에서의 가장 힘든 점

결혼이민자들이 느끼는 한국생활에서의 가장 힘든 점에 대한 설문문항에서 출신국가별로 약간 다른 반응을 보여 주었다. 조선족 출신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29.8%)과 외로움(27.7%) 그리고 언어문제(19.1%)의 순으로 응답을 한 반면, 기타 다른 국가 출신들은 언어문제를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대부분 60%이상의 반응)이라고 답하고 있다. 조선족 출신의 경우에는 타 지역 출신보다 언어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족

출신 이외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 특히 한족, 태국 및 기타 지역 출신은 언어문제 다음으로 문화적 이질감 및 외로움 등을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답하고 있다.

Chi-square 검증 결과($p < .000$)도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가에 따라 그들이 느끼는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출신국가별 결혼이민자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표 5-36〉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출신국가별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전체
		언어 문제	이웃주민 교류문제	경제 문제	가족의 무시·학대	남편 학대	자녀의 학습부진	외로움	문화적 이질감	
조선족	빈도	9	1	14	2	1	0	13	7	47
	전체%	19.1%	2.1%	29.8%	4.3%	2.1%	0%	27.7%	14.9%	100%
한족	빈도	40	4	7	1	1	0	2	12	67
	전체%	59.7%	6.0%	10.4%	1.5%	1.5%	0%	3.0%	17.9%	100%
베트남	빈도	134	3	14	1	0	2	1	6	161
	전체%	83.2%	1.9%	8.7%	0.6%	0%	1.2%	0.6%	3.7%	100%
인도 네시아	빈도	2	0	0	0	0	0	0	0	2
	전체%	100%	0%	0%	0%	0%	0%	0%	0%	100%
필리핀	빈도	43	1	4	0	0	1	3	2	54
	전체%	79.6%	1.9%	7.4%	0%	0%	1.9%	5.6%	3.7%	100%
몽골	빈도	9	0	2	0	0	0	3	2	16
	전체%	56.3%	0%	12.5%	0%	0%	0%	18.8%	12.5%	100%
태국	빈도	8	0	1	0	0	1	1	2	13
	전체%	61.5%	0%	7.7%	0%	0%	7.7%	7.7%	15.4%	100%
기타	빈도	6	0	0	0	0	0	0	2	8
	전체%	75.0%	0%	0%	0%	0%	0%	0%	25.0%	100%
전체	빈도	251	9	42	4	2	4	23	33	368
	전체%	68.2%	2.4%	11.4%	1.1%	0.5%	1.1%	6.3%	9.0%	100%

X²: 129.871, p=0.000, df=49

나. 자녀문제

결혼이민자가정의 어려움 중의 하나는 그들의 자녀문제이다. 자식들이 커가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는 언어문제뿐만 아니라 피부색깔과 학교생활에서의 학업성취도 및 친구관계 등이 크다. 그 중에서도 엄마의 출신국가에 따라 언어나 피부색깔이 달라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번 설문조사에서도 엄마의 피부색깔이 달라서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출신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5-37> 참조). 필리핀, 몽고, 태국 출신의 경우에 엄마의 피부색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비율이 타 국가 출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많은 비율(평균 약 73%)의 응답이 자녀들의 한국어 부진으로 인한 학습효과의 저하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높은 교육열에 비추어 볼 때 결혼이민자들의 관심도 당연히 자녀들의 교육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어적인 문제로 인한 학습부진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이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Chi-square 검증 결과($p < .003$)를 볼 때, 자녀들의 문제에 대한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가가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자신들의 출신국가에 따라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타 국가 출신에 비해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가정의 경우에 자녀들이 엄마를 창피해하고 거리감을 두고 있다는 응답이 약 17% 정도이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이 우리 보다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국가라는 사실과 그들이 겪는 언어적 어려움 등이 작용하여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편견 속에서 베트남출신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엄마를 창피해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37〉 자녀들이 커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출신국가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전체
		자녀들의 외적 변화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함	한국어 부진으로 학습효과 느낌	엄마를 창피해하고 거리감을 둠	엄마의 다른 피부색으로인 하여 친구들의 놀림감이 됨	
조선족	빈도	0	17	0	2	19
	전체%	0%	89.5%	0%	10.5%	100%
한족	빈도	1	8	0	0	9
	전체%	11.1%	88.9%	0%	0%	100%
베트남	빈도	1	22	5	2	30
	전체%	3.3%	73.3%	16.7%	6.7%	100%
인도 네시아	빈도	2	1	0	0	3
	전체%	66.7%	33.3%	0%	0%	100%
필리핀	빈도	5	9	0	5	19
	전체%	26.3%	47.4%	0%	26.3%	100%
몽골	빈도	0	4	0	1	5
	전체%	0%	80.0%	0%	20.0%	100%
태국	빈도	0	6	0	1	7
	전체%	0%	85.7%	0%	14.3%	100%
전체	빈도	9	67	5	11	92
	전체%	9.8%	72.8%	5.4%	12.0%	100%

X²: 39,209, p=0.003, df=18

다.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결혼이민자들이 느끼는 자신들의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출신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족이나 한족 그리고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반응은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은데 비해 필리핀이나 몽골 그리고 태국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다(<표 5-38> 참조). 문화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조선족이나 한족 및 베트남 출신보다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이 현재의 결혼생활에는 더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Chi-square 검증 결과($p < .330$)로 볼 때, 통계적으로는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결혼이민자 출신국가 간의 차이는 없다.

〈표 5-38〉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출신국가별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전체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조선족	빈도	5	17	23	5	2	52
	전체%	9.6%	32.7%	44.2%	9.6%	3.8%	100%
한족	빈도	9	25	26	7	1	68
	전체%	13.2%	36.8%	38.2%	10.3%	1.5%	100%
베트남	빈도	15	49	81	13	0	158
	전체%	9.5%	31.0%	51.3%	8.2%	0%	100%
인도 네시아	빈도	1	1	1	0	0	3
	전체%	33.3%	33.3%	33.3%	0%	0%	100%
필리핀	빈도	12	23	14	3	0	52
	전체%	23.1%	44.2%	26.9%	5.8%	0%	100%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전체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몽골	빈도	3	8	4	1	0	16
	전체%	18.8%	50.0%	25.0%	6.3%	0%	100%
태국	빈도	1	6	5	1	0	13
	전체%	7.7%	46.2%	38.5%	7.7%	0%	100%
기타	빈도	2	4	2	0	0	8
	전체%	25.0%	50.0%	25.0%	0%	0%	100%
전체	빈도	48	133	156	30	3	370
	전체%	13.0%	35.9%	42.2%	8.1%	0.8%	100%

X²: 30.703, p=0.330, df=28

라. 이웃주민들과의 상호교류

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과의 상호교류에는 대체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다. 이들의 출신국가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비율상으로 보면, 조선족(25%)이나 한족(31.3%)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이 타국가 출신에 비해 이웃 주민들과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나타나고 있다.

문화적으로나 피부색깔로 볼 때 약간 우리와 다른 지역 출신들, 예를 들면 필리핀이나 태국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이웃 주민과의 상호교류에 미치는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hi-square 검증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그들의 이웃 주민과의 교류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표 5-39〉 이웃 주민과의 상호교류 정도: 출신국가별

		이웃 주민과의 상호교류 정도					전체
		매우 잘됨	잘됨	보통	잘 안됨	전혀 안됨	
조선족	빈도	2	14	21	13	2	52
	전체%	3.8%	26.9%	40.4%	25.0%	3.8%	100%
한족	빈도	3	13	26	21	4	67
	전체%	4.5%	19.4%	38.8%	31.3%	6.0%	100%
베트남	빈도	7	29	106	20	6	168
	전체%	4.2%	17.3%	63.1%	11.9%	3.6%	100%
인도 네시아	빈도	0	0	3	0	0	3
	전체%	0%	0%	100%	0%	0%	100%
필리핀	빈도	6	23	19	5	1	54
	전체%	11.1%	42.6%	35.2%	9.3%	1.9%	100%
몽골	빈도	2	4	5	4	1	16
	전체%	12.5%	25.0%	31.3%	25.0%	6.3%	100%
태국	빈도	0	1	11	0	0	12
	전체%	0%	8.3%	91.7%	0%	0%	100%
기타	빈도	1	1	5	1	0	8
	전체%	12.5%	12.5%	62.5%	12.5%	0%	100%
전체	빈도	21	85	196	64	14	380
	전체%	5.5%	22.4%	51.6%	16.8%	3.7%	100%

X²: 40.371, p=0.061, df=28

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

결혼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출신국가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 차별성을 보인다. 앞서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조선족 출신인 경우에는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이 타 국가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글교실운영 보다는 자신들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정보프로그램의 제공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타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은 한글교실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기를 가장 많이 바라고 있었다.

이밖에 조선족(20%), 한족(15.2%), 베트남(8.3%), 필리핀(31.6%) 출신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남편교실운영을 두 번째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응답하였다. 보통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인 남편들하고의 나이 차이가 크다. 언어적 차이는 물론 문화적 차이 그리고 세대차이 까지 더해져 부부간의 가정문제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해가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남편들도 자신들 고유의 문화를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전문가와 면담을 해보면 결혼이민자들이 센터에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한다. 이유는 남편들이 비협조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의 출신지역에 따른 수요의 차이를 이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Chi-square 검증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프로그램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양 변수 간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5-40〉 지방자치단체에서 귀하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출신국가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 프로그램								전체
		한글 교실 운영	영농 교실 운영	남편 교실 운영	정보프 로그램 제공	응급구호 체계확립	전문상담 교실운영	화합프 로그램 강화	기타	
조선족	빈도	6	1	9	14	1	7	4	3	45
	전체%	13.3%	2.2%	20.0%	31.1%	2.2%	15.6%	8.9%	6.7%	100%
한족	빈도	17	4	7	7	1	4	1	5	46
	전체%	37.0%	8.7%	15.2%	15.2%	2.2%	8.7%	2.2%	10.9%	100%
베트남	빈도	91	3	11	10	1	3	8	6	133
	전체%	68.4%	2.3%	8.3%	7.5%	0.8%	2.3%	6.0%	4.5%	100%
인도 네시아	빈도	0	0	0	0	1	1	0	0	2
	전체%	0%	0%	0%	0%	50.0%	50.0%	0%	0%	100%
필리핀	빈도	14	1	12	7	2	1	1	0	38
	전체%	36.8%	2.6%	31.6%	18.4%	5.3%	2.6%	2.6%	0%	100%
몽골	빈도	4	0	1	4	1	2	0	0	12
	전체%	33.3%	0%	8.3%	33.3%	8.3%	16.7%	0%	0%	100%
태국	빈도	3	0	0	2	3	1	3	1	13
	전체%	23.1%	0%	0%	15.4%	23.1%	7.7%	23.1%	7.7%	100%
기타	빈도	5	0	1	1	0	0	0	1	8
	전체%	62.5%	0%	12.5%	12.5%	0%	0%	0%	12.5%	100%
전체	빈도	140	9	41	45	10	19	17	16	297
	전체%	47.1%	3.0%	13.8%	15.2%	3.4%	6.4%	5.7%	5.4%	100%

X²: 135.330, p=0.000, df=49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들을 위해 제공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

결혼이민자들은 출신국가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35%), 한족(42.9%), 베트남(46.6%)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은 자녀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원을 운영해 주기를 가장 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필리핀(37.5%)과 태국(50%) 출신은 한글교실을 더 선호하였다. 또한 베트남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의 출신들은 교과교육교실 운영을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자녀들의 학업성과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조선족과 베트남 그리고 몽골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처럼 출신국가별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Chi-square 검증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자녀에게 제공할 프로그램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양 변수 간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들에게 제공할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1〉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들을 위해 제공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 출신국가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제공해야 할 필요 프로그램					전치
		한글교실 운영	보육원 운영	교과교육 교실 운영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기타	
조선족	빈도	5	14	11	9	1	40
	전체%	12.5%	35.0%	27.5%	22.5%	2.5%	100%
한족	빈도	7	15	7	3	3	35
	전체%	20.0%	42.9%	20.0%	8.6%	8.6%	100%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제공해야 할 필요 프로그램					전치
		한글교실 운영	보육원 운영	교과교육 교실 운영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기타	
베트남	빈도	19	48	12	18	6	103
	전체%	18.4%	46.6%	11.7%	17.5%	5.8%	100%
인도네시아	빈도	1	0	1	1	0	3
	전체%	33.3%	0%	33.3%	33.3%	0%	100%
필리핀	빈도	15	6	10	7	2	40
	전체%	37.5%	15.0%	25.0%	17.5%	5.0%	100%
몽골	빈도	1	0	3	5	1	10
	전체%	10.0%	0%	30.0%	50.0%	10.0%	100%
태국	빈도	6	3	2	0	1	12
	전체%	50.0%	25.0%	16.7%	0%	8.3%	100%
기타	빈도	3	0	2	1	1	7
	전체%	42.9%	0%	28.6%	14.3%	14.3%	100%
전체	빈도	57	86	48	44	15	250
	전체%	22.8%	34.4%	19.2%	17.6%	6.0%	100%

X²: 49.203, p=0.008, df=28

3. 거주지역별 결혼이민자 의식분석

결혼이민자들이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지역별로 분류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결혼이민자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역의 분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유형화하였다.

본 절에서 다루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민원업무처리 경험 유무,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공무원의 친절도, 민원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불편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들을 위해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이며 각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결과에 대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민원업무처리 경험 유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설문문항에서 전체적으로 민원처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3.8%로 민원처리 경험이 있다는 응답 26.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모두 비율면에서는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표 5-42> 참조).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접근의 편리성 때문에 농촌지역의 거주자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처리 경험이 많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번 설문결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양 변수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square 검증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자신들의 민원처리 경험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2)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민원업무처리 경험 유무: 거주지역별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민원업무처리 유무		전체
		있다	없다	
도시 지역	빈도	50	147	197
	전체%	25.4%	74.6%	100%
도·농 복합지역	빈도	17	45	62
	전체%	27.4%	72.6%	100%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민원업무처리 유무		전체
		있다	없다	
농촌 지역	빈도	27	73	100
	전체%	27%	73%	100%
전체	빈도	94	265	359
	전체%	26.2%	73.8%	100%

X²: 0.149, p=0.928, df=2

나.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공무원의 친절도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체적으로 친절하다는 응답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28.5%, 그리고 매우 친절하다는 응답이 20.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체 비율은 각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도시지역 보다는 농촌지역에서 공무원의 친절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경우 약 67.3%가 대체로 친절하다는 반응이었고, 도·농복합지역에서도 약 62.9%가 친절하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82.2%가 친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약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hi-square 검증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로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3〉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공무원의 친절도: 거주지역별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공무원의 친절도					전체
		매우 친절함	친절함	보통임	불친절함	매우 불친절함	
도시 지역	빈도	23	49	34	0	1	107
	전체%	21.5%	45.8%	31.8%	0%	0.9%	100%
도·농	빈도	5	12	9	0	1	27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공무원의 친절도					전체
		매우 친절함	친절함	보통임	불친절함	매우 불친절함	
복합지역	전체%	18.5%	44.4%	33.3%	0%	3.7%	100%
농촌 지역	빈도	9	28	8	0	0	45
	전체%	20%	62.2%	17.8%	0%	0%	100%
전체	빈도	37	89	51	0	2	179
	전체%	20.7%	49.7%	28.5%	0%	1.1%	100%

X²: 6.594, p=0.360, df=6

다. 민원업무처리과정에서의 불편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민원업무처리 과정에서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불편한 점에 대해 의사소통에 따른 어려움을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의 약 1/2 이상(58.1%)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결혼이민자들이 언어에 대한 장벽으로 민원처리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말하는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에서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한글교육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농촌지역에 비해서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에서는 외국어안내책자의 부재를 불편 사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이 정보를 획득하려는 욕구가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과 민원업무처리에서의 불편사항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square 검증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로 민원업무처리에서의 불편사항이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4〉 민원업무처리에서의 불편한 사항: 거주지역별

		민원업무처리에서의 불편한 사항					전체
		의사소통의 어려움	복잡한 민원처리 절차	민원처리 도우미 부재	외국어 안내책자 부재	성의 없는 공무원의 답변	
도시 지역	빈도	52	14	11	16	1	94
	전체%	55.3%	14.9%	11.7%	17.0%	1.1%	100%
도·농 복합지역	빈도	9	0	5	3	2	19
	전체%	47.4%	0%	26.3%	15.8%	10.5%	100
농촌 지역	빈도	29	5	5	3	0	42
	전체%	69.0%	11.9%	11.9%	7.1%	0%	100%
전체	빈도	90	19	21	22	3	155
	전체%	58.1%	12.3%	13.5%	14.2%	1.9%	100%

X²: 17.303, p=0.027, df=8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이민자들을 위하여 제공해야 할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문항에 응답자들의 47.1%가 한글교실운영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언어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언어습득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극복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원활한 삶을 추구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보제공프로그램의 강화(15.2%)와 남편교실운영(13.8%)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한적이며 형식적인 정보제공의 범위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에 대한 강화요구는 특히 농촌지역(12.8%) 보다는 도시지역(17.0%)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남편교실(14.6%)이나 이웃 주민과의 화합프로그램(14.6%)을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지역에 비해 영농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양 변수 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Chi-square 검증 결과 유의수준 0.10에서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5〉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 거주지역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								전체
		한글 교실 운영	영농 교실 운영	남편 교실 운영	정보제공 프로그램 강화	응급 구호 체계 확립	전문 상담 교실 운영	화합 프로 그램 강화	기타	
도시 지역	빈도	80	2	28	29	5	13	6	8	171
	전체%	46.8%	1.2%	16.4%	17.0%	2.9%	7.6%	3.5%	4.7%	100%
도·농 복합지 역	빈도	20	1	7	6	1	2	7	4	48
	전체%	41.7%	2.1%	14.6%	12.5%	2.1%	4.2%	14.6%	8.3%	100%
농촌 지역	빈도	40	6	6	10	4	4	4	4	78
	전체%	51.3%	7.7%	7.7%	12.8%	5.1%	5.1%	5.1%	5.1%	100%
전체	빈도	140	9	41	45	10	19	17	16	297
	전체%	47.1%	3.0%	13.8%	15.2%	3.4%	6.4%	5.7%	5.4%	100%

X²: 23.155, p=0.058, df=14

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들을 위해 제공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보육원

운영(34.3%)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답하였다. 보육원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지역(34.5%)과 도·농복합지역(39.5%)이 농촌지역(30.3%)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응답은 설문대상자의 직업보유 희망여부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설문문항들 중에서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가에 대한 설문문에 대해 응답자의 83.3%가 취업희망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제적 이윤창출을 위하여 출산 후의 여성들에게 있어 부담이 되는 사항이 육아문제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혹은 관리되는 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항목에 응답했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보육원운영 못지 않게 한글교실의 필요성(28.8%) 그리고 자녀들의 교과교육교실 운영(15.2%)을 자신들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답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도시 및 도·농복합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 구축이 열악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이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교과학습 지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해 요구가 높다는 것을 응답결과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은 보육원운영에 이어 두 번째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녀들의 학습 증진을 위하여 방과후 학교 교육 그리고 부모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지역에서는 농촌지역과 도·농복합지역에 비해 자녀들에 대한 학습·교육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객들의 요구에 맞도록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과학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방과후 과외프로그램 제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농복합지역에서 차순위로 요구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부모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25.6%)을 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글교실 운영(3.2%)이었다. 도·농복합지역에서의 응답자는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모들과 자녀들 간의 친밀한 관계형성 및 다문화가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어울려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구성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양 변수 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Chi-square 검증 결과 유의수준 0.10에서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제공할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우선순위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역별 공통사항과 특이사항에 따른 정책을 분류하여 해당 지역의 결혼이민자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표 5-46〉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들을 위해 제공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 거주지역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들을 위해 제공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					전체
		한글교실 운영	보육원 운영	교과교육 교실 운영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기타	
도시 지역	빈도	30	49	32	25	6	142
	전체%	21.1%	34.5%	22.5%	17.6%	4.2%	100%
도·농 복합지역	빈도	8	17	6	11	1	43
	전체%	18.6%	39.5%	14.0%	25.6%	2.3%	100%
농촌 지역	빈도	19	20	10	8	9	66
	전체%	28.8%	30.3%	15.2%	12.1%	13.6%	100%
전체	빈도	57	86	48	44	16	251
	전체%	22.7%	34.3%	19.1%	17.5%	6.4%	100%

X²: 14.499, p=0.070, df=8

제3절 시사점

1. 제도적 측면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로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서비스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베트남, 한족, 필리핀, 몽골, 태국출신국가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원하고 있는 반면에 조선족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지역사회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으며 한국어에 익숙한 조선족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족, 한족, 베트남, 필리핀 출신들은 남편교실 운영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어 가정내 부부갈등의 존재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들을 위해 지원해 줄 프로그램에 대해 조선족, 한족, 베트남 출신은 보육원 운영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는 반면에 필리핀, 태국출신은 한글교실 운영을 원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출신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결혼이민자들은 방과 후 학교교실 운영을 원하고 있으며, 조선족, 베트남, 몽골출신의 여성들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원하고 있다.

둘째, 한국어교육 시간의 확대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의식분석에 의하면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웃과의 관계는 물론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담당공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취업의 어려움, 자녀의 학습지도의 어려움 등이 모두 한글과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타국에 갔을 때 그 나라 언어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사람이 되기 위해 온 이들을 위해 우리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주민자치 센터를 통해서, 민간기관에서는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절대적인 교육시간이 부족하며 교육체계 및 교육내용도 각 부처에서 발행하는 교재마다 차이가 있어 결혼이민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가에 따른 수요의 차이가 있음을 설문조사결과 알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한글교육에 있어서도 출신국가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매우 열성적이다. 이를 위해 정규학교 수업외에도 학원수업, 과외수업 등 사교육기관을 통해서도 자녀교육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킬 여유가 없다. 결국 학교교육과 집에서의 교육을 통해 자녀를 교육시켜야 하나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한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글 및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숙제 지도는 물론 알림장 내용을 알지 못해 자녀가 학교에 준비해 갈 내용물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녀들이 영유아 때 엄마와의 이야기를 통해 언어를 깨치고 두뇌가 발달하게 되는데 엄마가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두뇌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결혼이민자 자녀들은 학습부진아가 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정상적인 사회진출이 어렵게 되어 많은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사회저층으로의 전락을 예측할 수 있으며 향후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될 것이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혼란 극복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결혼이민자 및 자녀들은 가난과 언어장벽, 사회적 소외의 3중고를 받고 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자녀들이 나이가 점차 들면서 엄마 및

자신의 외모 및 피부색깔이 주위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엄마에 대해 창피해하고 적대감을 갖고 무시하고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친구들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모두 엄마 탓으로 돌리고 주위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교 및 주변에서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인과 결혼하게 된 이유에 대해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 즉, 한국에 가면 모국에서의 생활보다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그러나 의식조사 결과 현재의 경제생활에 불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만족하는 상태는 아니다. 또한 모국에서의 생활에 비해 경제적으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일부는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가정 대부분은 우리나라 평균 가정소득에 비해 경제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조사결과 결혼이민자의 취업욕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자신들의 낮은 경제수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모국에서의 전문성 및 현재의 취업희망사항과 연계시켜 직업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농촌총각의 30% 이상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있고, 초등학교의 한 반에 결혼이민자 자녀가 보통 한두 명씩 있는 것이 농촌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수도권외의 경우 거리 또는 지하철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와 피부색깔이 다른 외국인들이다. 이미 우리나라 사회도 국제화되었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이웃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요하고 이제는 단일민족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의식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 공익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한 일반적인 홍보는 물론 일본처럼 국제교류 및 다문화사회관련 교재를 제작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운영적 측면

첫째, 출신국가별로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생활적응도에 차이가 있다. 즉, 필리핀·몽골·태국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조선족·한족·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에 비해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들의 경우, 엄마가 필리핀·몽고·태국출신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에 비해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많다. 한편 한국생활 적응도를 볼 때, 우리나라와 피부색이나 문화가 크게 차이가 나는 태국·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이 조선족이나 한족에 비해 지역사회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출신국가별로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거주지역별 특성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에 따라서 그들이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차이가 나타난다. 조선족 출신의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정보프로그램의 제공을 원하는 반면 그 밖의 지역 출신은 한글교실운동을 최우선 서비스로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출신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상 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의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지역별 특성에 따른 일부 답변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과정에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결혼이민자에게 친절함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원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불편한 것과 관련하여 언어소통 문제에 있어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는 공통적으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며, 도시지역거주 결혼

이민자가 농촌지역 거주자에 비해 정보제공서비스를, 도·농복합지역 거주자는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남편교실운영과 이웃주민 화합서비스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에게 제공할 서비스로는 세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자녀를 돌보아 줄 보육원 설치 및 운영을 우선순위로 답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농촌지역 거주자는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실 운영, 도시지역과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자녀들의 학습증진을 위한 방과후 학교교육 프로그램에 답하고 있어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결혼이민자에 대한 언론의 지나친 관심과 과잉보도의 자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방송매체나 신문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많은 보도 및 방송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농촌총각 결혼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대한 보도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사회적인 사건 등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만 확대해서 보도하여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극히 일부분인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가정 파탄, 고부간의 갈등, 자살, 이혼율 증가, 사기 결혼 등이 주로 뉴스에 보도되거나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물론 뉴스로서 국민의 관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보도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혼이민자 의식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남편의 폭력, 고부간의 갈등은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 그 정도의 사건은 우리나라 일반가정에서 보통 일어나는 것으로 특별히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확대 보도되거나 흥미기사로 다루어지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따라서 언론에서도 이제는 보다 성숙된 시각으로 결혼이민자가 특별히 다른 부류가 아닌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하여 보도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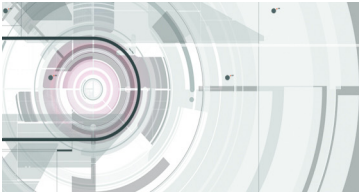
넷째,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해 살도록 주변의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부 언론의 국내거주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

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보도로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의식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 단 학회 논문이나 세미나발표 논문에서 결혼이민자의 현황과 문제점 부문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수 있으나 이는 단지 학문적인 시각에서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지적일 뿐이다. 비록 지금은 언어 등의 문제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으며 우리의 이웃으로 정착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주변 이웃 주민도 결혼이민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우리국민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배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제도적 측면 및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표 5-47>로 요약·정리하였다.

<표 5-47> 결혼이민자 설문조사에 따른 시사점: 제도적 및 운영적 측면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 시간 확대 및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체계 구축 필요 • 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 필요 •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혼란 극복을 위한 배려 마련 •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직업교육 제공 •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 • 결혼이민자에 대한 언론보도의 신중성 요구 •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해 살 수 있도록 주변의 배려 요망



제 6 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개선방안

본 연구는 제2장과 제3장에서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결혼이민자 개념,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지원체계, 외국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 안산시, 제천시, 장수군의 결혼이민자지원부서의 조직과 사업, 해당지역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사업내용과 운영실태를 살펴보았고, 제5장에서는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분류하여 해당지역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황과 문제점을 면접 및 설문문을 통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 지원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결혼이민자를 지역사회에 적응시키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 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공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제시되었던 결혼이민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시사점을 중심으로 지역에서의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기본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기본방향

1.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국제화와 개방화이며 교통·통신의

발달로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외국인의 국내 정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2002년 약 3만4천여명에서 2008년 5월 현재 약 14만4천여명으로 6년 사이에 약 4.2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민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고 있지만 이들의 특수한 사회적 위치로 인해 체류자격에 따른 신분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자녀교육 및 정체성 문제, 가정불화 및 이에 따른 이혼증가율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입국한 이민여성은 일정 기간 거주하는 동안 공적, 법적 인 보호를 제한적이거나 받을 수 있지만 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가 지닌 가정이라는 독특한 사적영역 안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되며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한국문화에의 동화를 강요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및 지역주민들 역시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단지 피부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을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외국인, 특히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우리나라 사람이 되고자 찾아 온 결혼이민자들을 대한민국 국민, 우리 지역주민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성숙된 국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과거의 교육에서 강조해 온 순혈주의라는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개방된 마음으로 결혼이민자를 진정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들을 위한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결혼이민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통합하여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지역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정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들을 단순히 일시적 체류자가 아닌 생활자·지역주민으로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결혼이민자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과거와 같은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차원의 새로운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적이나 민족을 초월한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2.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체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즉, 결혼이민자 정책과 관련하여 혼혈인 및 국제결혼가정의 복지는 보건복지가족부, 2세의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결혼이민자 문제가 다인종 다문화라는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많은 중앙부처가 관여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중앙부처가 없으며 이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결혼이민자 관리·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통합·관리 지원시스템이 부족하며 특히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시책 및 프로그램의 부족 등 행정서비스 지원체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부족현상으로서 결혼이민자와 내국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의 국적에 맞는 다양한 언어로 행정과 생활에 관한 정보 제공, 한국생활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담할 결혼이민자 상담창구가 부족하다. 또한 결혼이민자 사회생활 지원의 부족현상으로서 주거생활과 관련된 지원, 결혼이민자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건강·보건·의료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자연재해·교통사고·화재 등 안전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추진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출신국가별, 지역특성별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등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녀학습능력 개발, 경제능력 배양, 가족 지원 등 사회적응 지향적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표 6-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 방안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를 실질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지원정책 수립 •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의 공생을 위한 정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를 위한 종합적인 통합·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제2절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1. 제도적 측면

가. 중앙정부

1) 행정안전부의 결혼이민자 지원체제 강화

결혼이민자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제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의 많은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부처별로 분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하나의 통합된 부처 설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상황에서 외국인지원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즉,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업무는 법무부에서 수행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 위원회’에서는 외국인정책을 심의·조정하되,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관련 정책의 집행기능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도·감독·조정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도록 한다.³⁸⁾ 일반적으로 법령정비 등 제도적 사항은 법무부 등에

38) 현재 행정안전부에는 현재 자치행정과에 외국인주민담당(계장)과 계원 1명이 외국인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체제로서 외국인 기초통계자료

서 담당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의 생활지원업무를 법무부가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생활속에서의 실질적인 결혼이민자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조정기능이 가능한 행정안전부와의 연계를 통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기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다문화가정지원과’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팀(계)단위의 결혼이민자 지원부서를 두도록 한다. 다문화가정지원과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팀, 결혼이민자지원팀, 새터민·해외동포지원팀, 외국인유학생지원팀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특히 결혼이민자지원팀은 관련업무별로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지역사회통합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결혼이민자 관리 필수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보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담당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다문화주의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단기적인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행정안전부내 ‘다문화가정지원과’의 ‘결혼이민자지원팀’의 주요 기능은 <표 6-2>와 같다.

〈표 6-2〉 다문화가정지원과 결혼이민자지원팀의 주요 기능

구분	주요 기능
결혼이민자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통계조사, 지역사회적응 실태조사 • 결혼이민자 정착프로그램 및 매뉴얼 제작 보급 • 지방자치단체 결혼이민자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연계 • 결혼이민자지원 조례 제정 • 결혼이민자 지원지침 마련 • 결혼이민자관련 자료집 발간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결혼이민자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결혼이민자지원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작성, 외국인지원 추진지침 작성, 편람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단체 간에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에서 결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부 정책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정책의 큰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결혼이민자지원서비스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 한글교육사업, 자녀정체성교육, 국적취득 등의 주요정책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한 행정서비스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한다면 지역에서 결혼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결혼이민자 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결혼이민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정부 내에 결혼이민자 업무와 관련하여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그 지역에 필요한 결혼이민자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필요한 예산수급계획 등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통해 그 지역에 필요한 결혼이민자 지원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해당 지역 결혼이민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된 결혼이민자 지원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 연도의 협의과정에 이를 반영하며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즉, 현지 실태평가와 결혼이민자 만족도조사를 통한 종합평가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고 반대로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주거나 개선에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서비스 제공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3) 한국어 교육교재 및 교육체계의 통일

본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의 강화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교재의 혼재 및 교육내용의 차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물론 결혼이민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즉, 각 부처에서 발행하는 교재의 내용은 물론 이에 따른 교육체계도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결혼이민자정책지원 관계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교재를 초급, 중급, 상급으로 구분하여 제작하도록 하며, 통일된 내용의 교재와 통합적인 교육체계에 의하여 결혼이민자 각자의 수준에 맞게 맞춤형 한국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통일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교재 내용 및 교육체계에 대해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지역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및 시민사회단체의 한국어 교육강사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시키고 이들을 통해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이럴 경우 현재와 같은 다양한 한국어교육교재의 난립으로 인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

1) 외국인 지원부서의 통합 운영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부서 현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자치행정과 또는 사회복지과에 1-2명의 공무원이 타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혼이민자 지원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거나 지역의 조직특성에 따라 다른 부서 또는 다른 명칭으로 결혼이민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³⁹⁾

39) 물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와 도내에 있는 안산시 등의 기초자치단체는 특수한 경우로서 예외에 속한다. 안산시의 경우 외국인주민센터를 설치하여 17명의 공무원

현재의 인력으로도 결혼이민자 지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향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지원 및 문제해결에 더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유형에 따라 중앙부처의 기능과 연계되어 지방자치단체 내의 외국인 지원부서가 각 각 존재함으로써 인해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지원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통합된 외국인관련 지원부서로서 기초자치단체에 ‘다문화가정 담당(계)’을 설치하여 지역내의 결혼이민자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중국동포, 혼혈인, 외국인유학생, 상사주재원 등과 관련하여 통합된 종합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전혀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별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않거나 1명의 담당공무원이 타업무와 공동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한편 본 부서에서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시책 자문기구 구성, 외국인 지원업무의 민간위탁·지원업무, 예산지원,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규칙 제정, 지역단위 ‘다문화센터’의 설치·운영·지원업무, 지역 내 외국인 실태조사, 외국인학교 설립 등 특수시책 업무를 수행한다.

2) 다문화센터의 설치·운영

법률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산하에 가칭 ‘다문화센터’를 설치토록하며, 여기에서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내 다문화가정담당부서에서 하며, 운영은 지역 내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담당부서에서 직영하도록 하되, 지역내에서 외국어 구사 및 통역이 가능한 주부 및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다. 또한 본 시설은 기존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흡수·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읍면동에 설치되어

원이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있는 주민자치센터 내의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지원기능에 한계가 있을 시 본 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문제해결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결혼이민자와 관련한 다문화센터의 기능은 크게 상담기능, 정보제공기능, 언어교육기능, 지역사회로의 화합기능 등으로 나누어 행정서비스를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한다(<표 6-3> 참조). 첫째, 언어교육기능으로는 한국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교육을 받는 대상자에 따라 성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미취학 다문화 자녀로 분류하여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① 맞춤형 교육이다. 성인(결혼이민자)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기간에 따른 분류와 한국어 사용능력에 따른 분류를 통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선 기간의 경우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언어사용능력에 따른 측면은 한국어 사용능력에 따라 수강자를 분류하고 그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자가 지속적·효율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②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공공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한국어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다시 말하자면 공공교육기관(학교 등)에서 방과후 한국어지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교에서 체계적인 언어교육을 받도록 한다. 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센터에서는 공휴일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습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한국어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③ 미취학 자녀에 대한 교육이다.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자녀들의 경우, 다문화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한국어를 지도함으로써 취학 전까지 한국어 습득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정을 지원한다. 따라서 취학 후, 공공교육기관에서 한국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및 괴리감을 사전에 소멸시킴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상담기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일반 상담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상담을 통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한국문화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과정을 통하여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전문상담의 경우, ① 결혼생활에 대한 상담이다. 결혼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된 이들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여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질적인 문화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로서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전문적인 상담과정을 통하여 극복하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다. ② 결혼이민자 배우자(남편)를 위한 상담이다. 새로운 문화 창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면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문화·의식 등을 상담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다문화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괴리감 등을 상담을 통하여 해결한다. ③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상담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와 차별을 극복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통해 도와준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외톨이, 왕따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셋째, 정보제공기능으로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사회 및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①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안내책자와 지역정보소식지 및 지역지도를 구비하도록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온라인에서도 최신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출신국가에 대한 정보제공이다.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한국에 거주하는 이들이 자신의 조국(모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한다. 이를 위하여 외교통상부 및 해외 주재원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최신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동일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이 상호간 만나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온

-오프(on-off) 라인에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③ 응급구호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외국인 일 경우 한국인보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기에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다문화센터에서 응급구호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 소방본부와 중앙119구조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기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응급구호체계 정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④ 임신·육아정보 제공이다.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임신·육아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인과의 결혼을 위하여 오는 이민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이기도 한 임신·육아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센터 및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제공하며,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신 및 육아에 대한 정보 및 교육제공은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⑤ 취업정보제공이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에 진입을 희망하는, 즉 취업을 희망하는 다수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알선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최대한 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수성(특정언어의 사용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들이 배우기를 희망하는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알선 및 제공한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다수가 자동차운전⁴⁰⁾과 미용기술에 대한 교육혜택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된 기술교육 정보를 제공과 동시에 관련 기관을 알선함으로써 고객(외국인 거주자)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도록 한다.

넷째, 한국 지역사회로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으로는 지역사회의 이웃주민과 결혼이민자간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규모의 지역

40)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영어를 비롯하여 일어, 불어, 독일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언어를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필기시험에 대비한 자료집을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외국인용 학과시험 표준교본(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일본어, 불어, 독일어의 경우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를 통해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http://www.dla.go.kr/Servlet/Html_index.jsp#)).

문화축제보다는 지역이 오랜 기간 동안 고수하고 진행시켜 오고 있는 작은 규모의 문화축제 및 민족행사 등에 결혼이민자들을 포함시켜 문화축제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표 6-3〉 다문화센터 기능

구분		주요 기능
교육 기 능	한국 문화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 예절, 교양교육, 한국어 교육 등 • 남편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 출신국의 기초생활언어교육 - 부인의 출신국가 및 문화 바로알기 교육 - 나이차를 극복하는 방법 교육
	기초 생활 적응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초생활적응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교통질서·법규, 쓰레기배출 및 재활용 - 주택임대차 계약, 지방세납부, 근로 및 고용, - 자동차 매매, 운전면허취득, 가전제품수리, 중고가구매매 등
	2세 아동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학아동 교육 • 취학연령이 넘었는데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교육 • 휴일 및 일요일 교육 •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동 교육
상 담 기 능	전문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생활 상담 • 배우자 상담 • 자녀 상담 • 지역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변호사 등 자원봉사자 활용
	생활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금, 국제결혼, 출산, 여권, 국민연금, 주택임대차 계약, 가정문제 등
정보제공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어로 된 안내책자, 정보소식지, 지역지도 구비 • 각 국 홈페이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신국가 최신 정보 • 응급구호체계 정보 • 임신·육아관련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보건소 연계 • 취업알선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기술 - 자동차 운전, 미용기술 등
화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규모 문화축제 • 각 국 민족행사

3) 결혼이민자를 위한 민원창구 설치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거주자 전용의 원스톱(One-stop) 행정민원서비스 창구 설치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자를 비롯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행정민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외국인을 위한 전담기구(전담조직)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반적인 한국행정 및 한국문화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외국인의 입장에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민원처리과정이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에서의 결혼생활 등을 통하여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를 점차 경험해 나가야 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민원처리는 한국사회와 한국문화에 진입하는데 있어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등의 외국인 거주자들이 한국에서 그들의 민원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를 위한 행정민원서비스 전담창구를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단위)에서 설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전담 창구의 기능은 원스톱(One-stop) 조직으로 설계하여, 한국의 행정민원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결혼이민자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러 부서를 결혼이민자가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창구를 방문함으로써 이후의 민원처리과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추후에 산출되는 서비스를 혜택 받는 것을 의미한다.

4) 주민자치센터의 결혼이민자 지원기능 강화

결혼이민자의 지원은 그들과 가장 인근 거리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외국인 지원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이들이 결혼이민자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 읍면동사무소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지원담당의 배치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수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지역내에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의 거주자가 없는 경우 배치할 필요가 없다.

한편 주민자치센터내에 ‘다문화방’을 설치·운영한다.

주민자치센터의 ‘다문화방’은 ‘다문화센터’가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청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 특히 농촌의 경우 접근성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다문화센터의 기능 중 일부기능을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근거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주변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들이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첫째, 한글교실 및 컴퓨터교실의 운영이다. 본 교육은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주로 결혼이민자, 자녀 대상으로 한다. 둘째,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로서 교육대상은 다문화센터와 동일하다.⁴¹⁾ 셋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기계조작 등 영농교육의 실시이다. 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본 교육을 실시하며 농업기술센터, 읍면농업상담소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다섯째, 결혼이민자 남편교실의 운영으로서 교육내용은 역시 다문화센터와 동일하다.⁴²⁾

한편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문화센터에서와 같은 생활상담 등과 같은 상담기능을 하되, 다문화센터와 같이 전문가가 상주하여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1주일에 1회 또는 2회 정도 요일을 정해놓고 순회상담을 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가 내국인에게 모국의 문화 및 언어 교육을 실시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며, 출신국이 같은 결혼이민자 주부들끼리 만남의 장소 공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역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41) 주요 지원내용은 한국어 교육 및 학과공부 지원으로서 취학연령이 넘었는데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외국인2세 어린이,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한국인 학교를 다니나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외국인2세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다.

42) 주로 농촌지역 중심으로 운영하며 주요 교육내용은 부인 출신국의 기초생활언어 교육, 부인의 출신국가 및 문화 바로알기 교육, 나이차를 극복하는 방법 교육 등이다.

5)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확대 설치 및 차등적인 예산배분

현재 전국에는 8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수와 자치단체장의 정책우선순위 등 지역여건에 의해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결혼이민자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증가율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수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며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기존의 시설(기관)을 이용하도록 하여 설치에 따른 예산은 소요되지 않도록 하며, 인건비와 운영비만 지원하도록 한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종사자들이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자원봉사나 기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예산도 결혼이민자 및 가족수에 비례하여 적정규모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6)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의 보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의 주 내용을 보면 교육사업, 아동지원사업, 사회적응사업 위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업에 치중하는 주된 이유는 사업실적을 증대시켜 성과 위주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처해있는 결혼이민자 실태파악보다는 교육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확보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결혼이민자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즉,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통계조사를 통한 현황파악이며 이를 근거로 각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서는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의 국가별, 나이별 인적 사항 및 개인별·가정별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면 서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와의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무부서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의 대화 및 연계강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능력이 있다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결혼이민자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7) 결혼이민자 민원담당직원 능력 개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민원 전담창구는 영어를 비롯한 각 국의 언어사용에 있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외국인 민원인의 민원처리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적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직원의 개인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수를 파악하여 출신국가별 기본적인 언어교육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키도록 한다. 또한 해당 업무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원의 능력향상은 궁극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다중의 (multiple) 민원행정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접점(接點, a point of contact)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접수된 결혼이민자의 민원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운영적 측면

가. 교육

1) 한국어교육 및 적응교육 강화

영국·프랑스·독일 정부가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사회통합정책은 언어와 적응 교육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한국어 교육정책도 적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시간이 매우 부족하므로 시간을 크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내용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manual)화하여 교육하도록 한다. 즉,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에 갔을 때 하는 대화 등 한국에서 생활하는 결혼이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교재에 수록하는 작업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인과 한국사회의 기본적 가치관도 교재를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과 우리나라의 정치전통 및 관습 그리고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각종 위기 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그냥 단순히 교재에 담기보다는 핵심적 사항만 간결하게 포함하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등 상담소와 해당 행정기관 등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또한 한국어교사가 결혼이민자들의 제1차적 상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교육학 전공자로만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사회학·인류학·사회복지학·법학 등 사회과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언어교육 능력과 사회과학적 지식을 가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적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게 필수적이다. 또한 이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참가할 수 있는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결혼이민자 적응교육의 교재는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 전문성은 학문적 깊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

편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한 귀화자 또는 영주자 신분의 결혼이민자들이 입국기간이 짧은 결혼이민자 적응교육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

한국어 교육과 적응 교육을 같이 수강한 결혼이민자들은 자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국적과 나이를 초월한 ‘동창회’와 ‘개별적 가족 모임’ 등은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때 매우 유용하게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2) 아동의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지원 강화

교사들이 다문화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과과정과 교사의 일상적 생활 지도를 통해 아동들이 ‘다문화사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 삶’(共生) 내지 ‘다문화사회에서 서로 어울려 사는 삶’(相生)의 의미를 깨우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는 한편,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아동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과 일상적 생활지도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남편교실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이질감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부간의 문화적 차이점을 해소할 수 있는 남편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 중에 언어장벽 다음으로 제기된 문제점이 문화적 이질감에 의한 어려움이다. 문화적 이질감이 발생하는 최소의 사회적 단위가 부부사이이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부부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문제로는 가정불화, 시부모와의 갈등, 다문화가정의 자녀 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갈등이 아닌 융합으로의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부부 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들은 남편들이 자신들에 대해 이해하며, 상호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남편교실은 부부 사이에서 어느 한쪽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서로 간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상호간 부부로서의 생활에서 안정을 갖도록 하도록 한다. 다만,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남편이 타문화의 배경 속에 살아온 부인을 이해하고 배워나가는데 프로그램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강화

결혼이민자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많은 관심은 물론 이해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무원과 국민들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즉, 아직도 단일민족 또는 순혈주의에 대한 뿌리 깊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 피부색깔이 다른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백인에 비해 동남아시아인 및 아프리카인에 대한 편견은 매우 심하다.

요즈음의 세계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촌화 된 지 이미 오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도 편협하고 닫힌 사고에서 벗어나 피부색깔이 다른 외국인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드리는 개방된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은 어떠한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경우 시도 공무원교육원 교육프로그램에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신설하되 결혼이민자 관련 교과목을 반드시 넣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사회와 결혼이민자관련 특강시간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이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한편, 일반 직장인의 경우 자체교육 등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에 관한 특강

을 마련하도록 한다. 지역주민에게는 민방위교육, 문화강좌 등에서 다문화사회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강의와 홍보물을 상영하도록 하며, 지역의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한다.

나. 행정서비스

1) 결혼이민자 출신국가별 맞춤서비스 제공

의식분석 결과, 결혼이민자 출신국가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길 원하는 서비스프로그램에 일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한족·필리핀·몽골·태국출신국가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교육프로그램 중심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제공해 주며, 조선족은 지역사회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한편 조선족·한족·베트남·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이들 남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남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들을 위해 지원해 줄 프로그램으로는 조선족·한족·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에게는 보육원 운영 서비스를, 필리핀·태국 출신의 결혼이민자 자녀들을 위해서는 한글교실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한편 베트남출신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결혼이민자들이 자녀들을 위해 방과후 학교교실 운영을 원하고 있으므로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강화하며, 조선족·베트남·몽골출신 결혼이민자 자녀들에게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2) 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지역별 특성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

본 연구에서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유형화하여 각 지역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의식분석을 한 결과, 지역별로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차이가 일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할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세가지 유형의 지역 모두 한글교실을 우선적으로 답변하였고, 두 번째로는 도시와 농촌지역은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도·농복합지역은 남편교실 운영과 이웃주민과의 화합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들을 위해 제공할 프로그램으로 세가지 유형의 지역 모두 보육원 운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도시지역은 교과교육교실 운영, 도·농복합지역은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농촌지역은 한글교실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할 지역특성별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이다. 두 지역에서는 지역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건물, 버스정류장 등에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안내책자, 지역정보소식지, 지역지도, 취업정보소식지 등을 비치하며,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다양한 언어로 각 국가에 대한 소식을 전하도록 한다. ② 도·농복합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남편들이 자신 및 자신의 국가를 이해하며, 상호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남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이웃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운동회, 반사회 개최, 지역주부 모임 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다음은 지역특성별로 자녀를 위해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서비스프로그램이다. 도시지역에서는 자녀의 학과목 성적의 향상을 위해 방과후에도 학교에서 과외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도록 한다. 도·농복합지역은 학교나 시민사회단체 또는 청소년회관 등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한다. 농촌지역은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예산지원과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방과후에도 학교에서 한글교육을 시키고 자녀와 자원봉사자 또는 선생님과 일대일로 언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멘토링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결혼이민자 가정방문 한글교육 시, 자녀들도 함께 한국어 및 한글교육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세유형의 지역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강화를, 자녀들을 위해서는 보육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3) 정보제공 기능 강화

결혼이민자들은 본인과 관련한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12월 2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결혼이민자가족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은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현행 제도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접근성과 용이성이 부합된 효과적인 정보제공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에 맞춘 그리고 해당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에 적합한 적절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한다. 따라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생활환경의 차별성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적절한 최신의 정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형식적이거나 중앙정부 혹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보제공프로그램을 여과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에 맞는 적합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한다.

다. 시민사회단체 참여

1) 민관파트너십의 강화 및 역할분담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체계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획과 예산지원, 시민사회의 경험과 인

력 지원이 결합되어 정부-민간 파트너십을 적절히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가 운영해 온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와 노하우를 소중한 자원으로 인정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측간의 신뢰속에서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가 그동안 축적해 놓는 경험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의 수립 등 민관협력의 장점을 살린다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내 결혼이민자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추진주체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수립 및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민간부문의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6-4> 참조).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결혼이민자 지원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지역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각종 행정서비스 지원, 다문화공생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역내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관련단체를 네트워크화 하고 민간단체의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행사지원과 민간위탁을 추진하며, 주민자치센터내 외국인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설, 민간단체를 활용한 실태조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활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를 보완하고 민관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와 내국인 화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의 실태조사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불법체류자 등 행정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표 6-4〉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과의 결혼이민자지원 역할분담

구 분	주 요 기 능
지방자치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마련 •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 • 다문화공생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 • 상담업무 수행 • 외국인 및 관련 단체 네트워크화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결정 • 결혼이민자 실태조사 시, 민간단체 활용 • 결혼이민자 지방공무원 특별 채용 • 주민자치센터내 결혼이민자관련 프로그램 개설 -자원봉사자 모집
시민사회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뿌리조직 프로그램 운영 • 공공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지원시책·프로그램 운영 • 행정기관과의 민·관파트너십 형성 • 봉사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 행정기관으로부터 민간위탁받아 운영 • 결혼이민자를 위한 고충상담 및 법률상담 • 인권, 평화를 위한 캠페인 •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2)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유도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들의 참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중 운동, 포럼, 봉사, 캠페인, 토론회 등의 개최로 친근하게 주민의 일상생활과 접하고 있으며, 공공적 토론광장과 시위, 시민운동 제안회의, 시민지도자 육성의 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시민단체의 연대 강화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환경, 교육·청소년, 사회복지, 교통, 소비자보호, 행정감시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적극

적으로 활동하는 순수 시민운동단체는 별로 없다.

이제 시민사회단체도 위에서 언급한 분야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시기가 되었다. 지역에서의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사회단체보다는 종교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시민사회단체가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을 중심으로 이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현장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 등을 방문하여 서로 간의 대화, 함께 놀아주기, 고충상담 등의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제21,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등에서 시민사회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권유 유도는 물론 자원봉사활동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자원봉사자의 활성화

각 지역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다른 주체들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서비스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만의 노력만으로는 결혼이민자들이 처해있는 어려운 문제와 서비스 욕구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용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회봉사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선진 외국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이웃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

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사회적 봉사로 인한 성취감 등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즉, 이웃으로서 결혼이민자의 대화상대가 되어주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한국의 사회풍습, 관습, 지역사회 정보, 민원서류 신청하는 방법 등 행정기관 방문 시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며,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한다.

라.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1)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분위기 조성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결혼이민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며 시민사회단체가 헌신적인 봉사를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사회생활에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이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지역의 이웃 주민이 결혼이민자가 한국문화 및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지역모임 및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⁴³⁾ 이를 위해서 도시지역에서는 반상회, 시민사회단체 모임, 아파트 주부모임, 주민자치회, 학교학부모모임 등에, 농촌지역에서는 농사일, 지역축제, 운동회, 동네행사 등의 모임에 적극 참여토록 권유한다. 이와 같은 장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연스러운 교류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과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고 특히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한편, 지역사회로의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이웃주민

43) 최현미(2008)는 결혼이민자들의 지역 사회에 참여 필요성과 이를 위한 과제를 소개.

과 결혼이민자간의 어울릴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대규모의 지역문화축제보다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켜오고 진행시켜 오고 있는 작은 규모의 문화축제 및 민족행사 등에 결혼이민자들을 포함시켜 문화축제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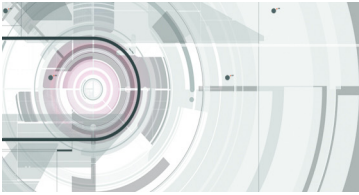
2) 결혼이민자 지원행사 통합 개최·운영

지방자치단체내 기업 등 많은 기관에서 기관의 홍보 겸 결혼이민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각각의 기관에서 비슷한 유형의 행사가 중복 개최되다 보니 결혼이민자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각 기관들은 유사한 행태의 결혼이민자 지원행사를 자제하고 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부서는 각 기관간 유사한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하도록 조정한다. 한편 부득이하게 행사가 개최될 때는 결혼이민자들의 가정생활이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표 6-5〉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의 결혼이민자 지원체계 강화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결혼이민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한국어 교육교재 및 교육체계의 통일 • 지방자치단체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지원부서의 통합운영 - 다문화센터의 설치·운영 - 결혼이민자를 위한 원스톱(One-stop)민원창구 마련 - 주민자치센터의 결혼이민자 지원기능 강화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확대설치 및 차등적 예산배분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의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및 한국사회로의 적응교육 강화 -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강화 - 남편교실 운영 -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및 홍보 강화 • 행정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 - 정보제공 기능 강화 • 시민사회단체 참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파트너십(로컬 거버넌스: Local Governance) 강화 및 역할분담 - 적극적인 시민사회단체 참여 유도 - 자원봉사자 활성화 마련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민원담당직원의 업무능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분위기 조성 - 결혼이민자 지원행사 통합 개최 및 운영



제 7 장 요약 및 결론

최근 우리나라에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언론을 통해 자주 등장하고 있고 시내 거리나 전철내에서 우리와 피부색깔이 다른 외국인과 자주 마주치게 된다. 과거에는 주로 백인 아니면 흑인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을 만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외국인 유형은 크게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들 수 있다.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오는 주된 목적은 경제적인 이유이며 이들은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되거나 일정 기간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성결혼이민자는 결혼 후 2년이 경과하고 일정한 심사를 통과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즉 한국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나라 사람, 우리 이웃 주민이 되어 이 땅에 영원히 뿌리내리고 살아가게 된다.

결혼이민자의 수는 2002년에는 약 3만4천명 정도였던 것이 2008년 5월 현재 144,385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총각의 약 30% 이상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살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정착과정에서의 생활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한국어교육, 자녀교육, 가정생활, 가정경제, 이혼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한국 정착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결혼이민자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먼저 본 연구의 내용을 각 장별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들이 여러 인종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서,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의 개념정의와 다문화주의 이론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현황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체계와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외국 사례로서 대만, 일본, 영국의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살펴 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현황과 문제점을 삼았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은 안산시, 도·농복합지역은 제천시, 농촌지역은 장수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직출장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담당공무원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담당자와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도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례지역의 결혼이민자 일반적 개요, 결혼이민자 지원 담당인력과 업무,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및 예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조사·분석과 면담을 통해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의 총 751명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조사하였으며 이중 389개의 유의미한 설문지가 입수되어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설문항목은 크게 인적사항, 교육, 가정생활, 지역공동체, 서비스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시켜 모두 33개의 설문문항을 만들어 질문을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주로 중국(한족), 조선족,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태국, 기타국가 등이다. 분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시도되었다. 첫째는 각 문항에 대한 단순 빈도분석이다. 둘째는 각 설문내용에 대한 출신국가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는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의 지역특성별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이와 같이 분석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방안의 기본방향을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정하였다. 개선방안은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전자는 다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후자는 교육, 행정서비스, 시민사회단체,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등으로 유형화시켜 결혼이민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결혼이민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결혼이민자정책은 결혼이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도록 강요하는 지나친 동화주의정책보다는 결혼이민자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출신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상호 교류하는 다문화주의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효율적인 결혼이민자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결혼이민자 지원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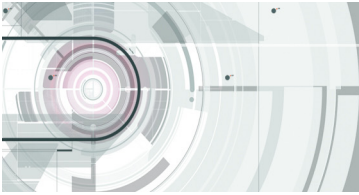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은 결혼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국내거주 외국인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및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실질적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미흡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달되는 정책만 수행하였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내국인과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생활정보 제공·상담창구 설치 등 커뮤니케이션관련 서비스가

부족하고, 자녀 교육지원·보건·의료 등 사회복지서비스, 자연재해·화재 등의 사회생활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나마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미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정책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결혼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통합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결혼이민자가족 관리와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통합하여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킨다 해도 결혼이민자가 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주변의 이웃 주민이 이들에 대해 우리와 피부색깔이 다르다고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소외시킨다면 결혼이민자가 우리 국민, 이웃 주민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 주민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따뜻한 시각과 배려이다.

국제화·글로벌화의 지구촌시대에 살면서 우리 국민 모두 순혈주의에 집착하는 지나친 민족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보면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이 결코 낯선 이방인이 아닌 진정한 이웃으로 보일 것이고 그들의 문화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다수인 우리 국민이 소수인 결혼이민자에 대해 포용력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보여야 할 것 이고 이럴 경우 결혼이민자도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결혼이민자와 이웃 주민이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화합된 모습을 보일 때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아름다운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형기(2002). “지방의 정주화와 정주외국인의 참정권” 『지방행정』. (581). 16-23.
- 강희원(2007).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방정부” 2007년 한국행정학회·구미시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7-96.
- 고모다 마유미.(2007). “일본의 다문화공생은 가능한가?” 『민족연구』. 51-64.
- 고숙희(2008). “정부의 다문화사회 접근전략모색: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18권 1호. 25-45.
- 곽금주(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 가정에서의 부모-자식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곽준혁(2007). “미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민족연구』. 126-143.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구건서(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90). 29-52.
- 구미시(2006). 「구미시가 열어 갑니다」. 구미시.
- 국경없는 마을(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사)국경없는마을 학술토론회 발표집.
- 김갑성(2006). 「한국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동원·박혜진(2008). 「농업·농촌에 대한 200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경아(2008).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성격과 이주여성의 정책수요: 전라남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 김세훈(2006). “문화사회의 문화정책” 한국행정학회 · 서울행정학회 ·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61-470.
- 김용찬(2007). “영국의 다문화주의 담론과 정책” 「민족연구」. 144-158.
- 김운태 · 설동훈(2005). “대만의 국제결혼 이민자 복지정책” 「중소연구」 107호, 143-187.
- 김이선 · 김민정 · 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여성개발원.
- 김현민 · 김유미 · 박지현(2008). “다문화사회의 정책적 이슈에 대한 고찰”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혜순(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 36-71.
- 김희정(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57-79.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한울아카데미).
- 문경희(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 정치학회보」 16(3): 67-93.
- 박천웅(2006). 「이주민 신학과 국경없는 마을 실천」. (안산: (사)국경없는 마을).
- 박철희(2007). “다문화교육의 관점에 기초한 초등 사회 · 도덕교과서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연구」. 17(2). 110-123.
- 박혜정(1992). “다문화 음악의 이해와 그 적용” 「국악과 교육」. (10). 103-171.
- 법무부 외(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서울 : 법무부).
- 법무부 외(2006).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서울 : 법무부).
-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2006). 「혼혈인 등 소수인종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
- 서울특별시(2006). 「지역사회통합지원업무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 설동훈(2004).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2008). “한국사회의 소수자문제” 경제·인문사회연구원과 미래기획위원회 주최 국정과제 기획토론회 자료집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2006). 「한국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및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보고서」. (서울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 송종호(2006).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의 현황과 활동” 한국민족연구원. 29-53.
- 안산시(2006). 「2006년도 업무보고」. 안산시.
- 안산시(2006). 「국경없는 도시 안산이 만들어가는 세상」. 안산시.
- 오경석(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21-56. 오경석 외.(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아카데미).
- 유희정(2008).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 제2권 1호. 1-22.
- 윤인진(2008). “효과적인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바람직한 다문화 가정 정책 모색을 위한 워크숍」. 행정안전부: 79-99.
- 이종열·황정원·노지영(2008).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 접근: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 이진숙(2005). “사회통합과 외국인 가족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57(2).
- 장혜경(2006).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자치행정연구」. (5). 97-110.
- 정기선·김영혜·박경은·이은아·박지혜·이승애·이지혜(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 정일선(2006). 「결혼이민자가족실태와 통합의 가능성」.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27-144.
- 정정희(2008).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향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 정희라(2007). “영국의 자유방임식 다문화주의” 「이화사연구」 제35집, 1-27.

- 조상균·이승우·전진희(2007). “다문화가정 지원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1호. 147-174.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현미(2008). “다문화시대의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 조혜영·서덕희·권순희(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18권 2호: 105-134..
- 천전진유미(2001). “일본의 외국인정책” 「민족연구」 제6호, 149-160.
- 최 현(2007).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multicultural citizenship): 다문화 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2호, 147-173.
- 최현미(2008).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바람직한 다문화 가정 정책 모색을 위한 워크숍」. 행정안전부: 101-119.
- 한국사회학회(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대위원회 용역과제.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6). 「지방의 국제화포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 한승준(2008). “동화주의모델 위기론과 다문화주의 대안론: 프랑스의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 행정안전부(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결과」. 행정안전부.
- 행정자치부(2006). 「국내거주외국인 자료집」.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2006).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현황」.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2006). 「지역사회지원업무 추진지침(안)」.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2007).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행정자치부.
- 허인정(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현실과 개선방안, 다문화포럼 발족기념세미나 발표논문집.
- 홍기원(2007). “다문화사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문화정책의 역할과 과제” 2007년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 Barber, B.R. "Global Multiculturalism and American Experience", *Ethnic and Policy Journal*, 10권 1호(1993).
- Franklin, J.H.(1989). *Race and History*.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 Barlow, I. M.(1981). *Spatial Dimensions of Urban Government*. New York : John Wiley & Sons.
- Ernest B. Hamper & Arthur Dunham, eds(1959). *Community Organization in Action*. As-socation Press.
- Gerry Stoker.(1987). *The Politics of Local Government*, Macmillan Press. 2nd. 30.
- Hallman, Howard W.(1987). *Neighborhoods*. London : Sage.
- Hillery, G. A.(1995). "Definition of Community". *Rural Sociology*. Vol. 20.
- Haeberle, William D.(1987). "Neighborhood Identity and Citizen Participation". *Administration & Society*. Vol. 19-2.
- Janowitz. Morris.(1980). *The Community Press in an Urban Setting: The Social Elements of Urbanism*. Chicago.
- Rohe, William M.(1985). *Planning with Neighborhoods*, North Carolin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宮島喬.(2004), 国際と多文化の間. 自治体国際化フォーラム.
- 山脇啓造.(2002). '外国人政策-多文化共生へ基本法制定を', 朝日新聞. 2002.11.16
- 山脇啓造.(2005). 多文化共生の學校づくり. 東京 : 明石書店.
- 總務省.(2006). 多文化共生の推進に関する研究會 報告書. 東京:總務省
- 總務省.(2004). 地域における多文化共生推進プラン. 東京 : 總務省
- <http://www.soumu.go.jp/kokusai/index.html>
- <http://www.moj.go.jp/NYUKAN/HOUREI/h06.html>
- <http://www.clair.or.jp/forum/culture/187/index.html>
- <http://www.homeoffice.gov.uk/>
-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access_onlinetools.html(Race Equality in Public Service)

Abstract

A Study on Improving the Supporting System for Married Immigrant Women Delivered by Local Governments

It seems that the concept of multiculre or multiculturalism is not strange any more in Korean society.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come to Korea because of business, study, or marriage with Koreans has rapidly increased. In the early 1990s the majority of foreigners were factory workers came from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Pakistan, and Bangladesh. Since then, a huge influx of many foreign brides has been brought about throughout an international marriage with Koreans, especially rural bachelors. About 30% of rural bachelors get married with foreign women. The total number of married immigrant women is 144,385 people in 2008. It charges for about 16% of the whole foreigners.

Korean society has enjoyed homogeneous culture for a long time. It has constructed its national identity and tradition based on the myth of the single ethnicity. However, there have been the recent influx of foreign workers and brides into Korean soceity because of globalization and the spread of capitalism. In consequence Korean society rapidly goes toward multicultural society. Now, it has faced with the new challenges raised in multicultural societies. It needs to establish a new way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out the spread of multiculturalism in Korean society which multicultures and multiraces go together with Korea's original cultural tradition. That is, the goal of multiculturalism is to achieve socail development

throughout the coexistence of various cultures and nationaliti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couple of action plans supporting for married immigrant women which can be delivered by local governments. In fact, many married immigrant women have suffered from socio-economic difficulties such as an acquaintance with neighbors, a lack of job opportunity, children's education, and family issues. Those problems are mainly derived from disfluency in Korean, cultural shock, and low incomes. Under the context that an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e influx of foreign brides are expected to be consistently increased, it is very important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lay an active role of supporting them as well as civic associations. In particular,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more important than other institutions. This is because local governments are the main actors who directly provide various services for these married immigrants women living in local areas.

However, the service delivery system led by local governments has not been systemized and effective so far. Meanwhile, central government and civic organizations have mostly charged for supporting foreigners working and living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civic organizations have made a huge effort to solve the problems which foreigners faced with. Instead, local governments have only delivered the services arran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acked of understanding of married immigrant women. Thu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what local governments can do for married immigrant women's better life. 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of the supporting system. It is argued that local governments have to play an active role for supporting married immigrant women on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in local community. Local governments have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multicultural society throughout building up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married immigrant women.



부 록

부록: 설문지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강화방안 -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내거주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순혈주의에 빠져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차별적 국민의식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거주 외국인이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빈곤 등으로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 내의 갈등, 자녀의 정체성 혼란과 학교부적응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에게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당 연구원에서는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의 협조를 얻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복지향상을 위해 귀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답변내용은 연구를 위한 통계적 활용 이외에는 절대 사용치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에게 감사드립니다.

2008. 8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2-13(우편번호:137-070)
- 조사기간 : '08. 8.

7. 귀하 남편의 직업은?

- ① 농업 ② 어업 ③ 사업(상업) ④ 회사원
 ⑤ 서비스업 ⑥ 공무원 ⑦ 무직 ⑧ 기타()

8. 귀하가 한국인과 결혼하게 된 이유는?

- ① 한국에 가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되어
 ② 결혼 중개업소의 권유에 의해
 ③ 한국이 좋아서
 ④ 본국 친정 집안살림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⑤ 기타()

9.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 ① 말이 잘 통하지 않음
 ② 이웃주민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
 ③ 경제적으로 어려움
 ④ 가족들의 무시 및 학대
 ⑤ 남편의 학대
 ⑥ 애들이 공부를 못함
 ⑦ 외로움
 ⑧ 문화적 이질감

2 언어문제

10. 귀하의 한국어 사용 정도는?

- ① 매우 잘함 ② 잘함 ③ 보통임 ④ 잘 못함 ⑤ 전혀 못함

11. 귀하는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 ① 가정방문선생님의 한글교육을 통해서
- ② 가족 및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서
- ③ 시민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을 통해
- ④ 친구 및 동료
- ⑤ 주민자치센터의 한글교실
- ⑥ 기타()

12. 한국어를 잘 못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불편한 점은?

- ① 자녀교육의 어려움
- ②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가족 및 이웃과의 교류가 부족함
- ③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획득이 어려움
- ④ 행정기관에 가서 민원서류 등을 떼는데 어려움

③ 자녀교육 문제

(다음 13번부터 16번 까지는 자녀가 유치원을 또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자녀들이 커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 ① 자녀의 피부색이나 얼굴모습이 한국인과 달라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함
- ② 한국어를 잘 몰라 학습효과가 느림
- ③ 엄마를 창피해 하고 멀리함
- ④ 친구들이 엄마의 피부색이 한국인과 다르다고 놀려서 마음의 상처를 받음

14. 자녀들의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의 학습능력 및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① 매우 잘함 ② 잘함 ③ 보통 ④ 못함 ⑤ 매우 못함
15. 귀하께서는 자녀들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갖고 오는 알림장 내용이나 숙제에 대해 어느 정도 도와줍니까?
- ① 매우 잘 도와 줌
 ② 약간 도와 줌
 ③ 보통임
 ④ 거의 도와주지 못함
 ⑤ 전혀 도와주지 못함
16. 유치원 또는 학교 이외의 기관(학원, 과외 등)에서 자녀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④ 가정경제

17. 귀하 가정의 한 달 수입은?
- ① 50만원 -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150만원 미만
 ③ 150만원 - 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 250만원 미만
 ⑤ 250만원 - 300만원 미만
 ⑥ 300만원 이상
 ⑦ 기타()

18. 지금의 생활이 모국에서의 친정생활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비슷하다 ④ 모르겠다

19. 현재 가정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20. 취업을 하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1. 배우고 싶은 기술은?

- ① 자동차 운전 ② 미용기술 ③ 수지침
④ 간병인 ⑤ 영농기술 ⑥ 요리사
⑦ 기타()

5 가정문제

22.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23. 시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다음 24번은 위의 23번에서
“① 있다” 라고 체크한 분만 답하십시오

24. 갈등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 ① 언어소통이 잘 안되어서
- ② 친정에 돈을 보내는 일로 인해
- ③ 외국인이라고 무시해서
- ④ 출생국가와의 문화차이에 의한 오해로 인해
- ⑤ 기타()

25.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다음 26번은 위의 25번에서
“① 있다” 라고 체크한 분만 답하십시오

26. 폭력경험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 ① 말이 통하지 않아 오해가 발생하여
- ② 친정에 돈을 보내는 일로 인해
- ③ 외국인이라고 무시해서
- ④ 시댁식구와의 갈등이 발생하여
- ⑤ 애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 ⑥ 출신국가와의 문화차이에 의한 오해가 발생하여
- ⑦ 기타()

⑥ 이웃주민과의 관계

27. 이웃 주민과의 사이는 좋습니까?

-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임 ④ 나쁨 ⑤ 아주 나쁨

28. 이웃 주민과의 상호교류는 잘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됨 ② 잘됨 ③ 보통임 ④ 잘 안됨 ⑤ 전혀 안됨

29. 이웃 주민들과의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 ① 말이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잘 안됨
 ② 피부색깔이 다르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③ 일이 서툴다고 지역 일(행사)에 참여시키지 않음
 ④ 출신국가와의 문화차이가 커 이웃 사람들과 적응하기가 힘들
 ⑤ 기타()

7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역할

30. 귀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다음 31번과 32번은 위의 30번에서
 '① 있다' 라고 체크한 분만 답하십시오

31.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친절 정도는?

- ① 매우 친절함 ② 친절함 ③ 보통임 ④ 불친절함 ⑤ 매우 불친절함

32.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경우 가장 불편한 점은?

- ① 공무원과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답답함
 ② 한국의 민원처리절차가 너무 복잡함
 ③ 결혼이민자의 민원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없음

- ④ 외국어로 번역된 안내책자가 비치되어 있지 않음
- ⑤ 묻는 말에 공무원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지 않음

33.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귀하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 ① 한글교실 운영
- ② 농기계 조작 및 영농교실 운영
- ③ 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남편교실 운영
- ④ 외국인을 위한 정보제공 프로그램 강화
- ⑤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응급구조체계 확립(의료, 방재, 재난 등)
- ⑥ 결혼이민자 전문상담교실 운영
- ⑦ 이웃 주민과 결혼이민자간 화합 프로그램 강화
- ⑧ 기타()

34. 자치단체 차원에서 자녀를 위해 제공해야 할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 ① 방과 후, 한글습득을 위한 한글교실 운영
- ② 일을 할 수 있도록 애들을 돌보아 줄 보육원 운영
- ③ 방과 후, 학습증진을 위한 교과교육교실 운영
- ④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⑤ 기타()

8 기타

35. 귀하께서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시민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나가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다음 36번은 위의 35번에서
'① 있다' 라고 체크한 분만 답하십시오

36. 시민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① 한국어 교육
 - ② 개인 고민상담
 - ③ 자국출신 결혼이민자와의 만남의 장소 제공
 - ④ 컴퓨터교육
 - ⑤ 의료지원
 - ⑥ 애들 돌보아 줌
 - ⑦ 인권 교육
 - ⑧ 기타()
37.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 ① 참는다
 - ② 근처 시민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의 상담원을 찾아 상의함
 - ③ 같은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와 상의함
 - ④ 지역 내 자치단체 청사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의 상담원을 찾아 상의함
 - ⑤ 기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